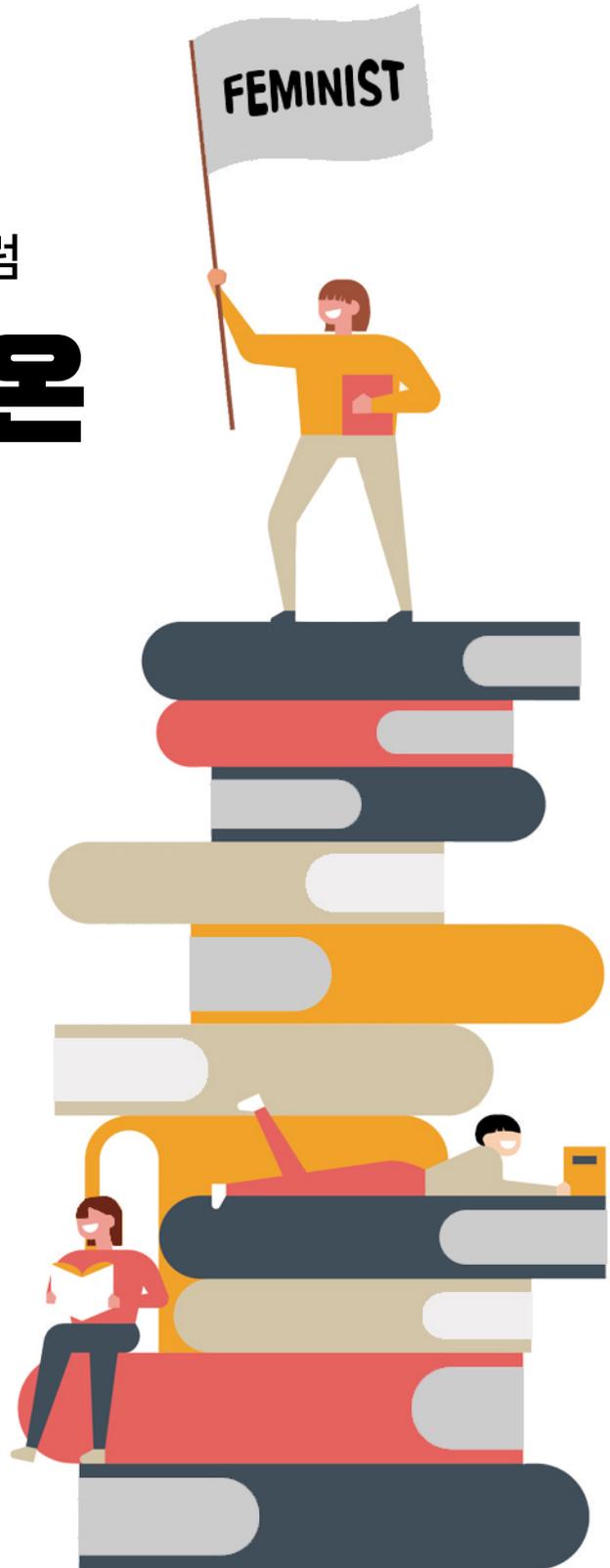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네트워크 포럼

책을 뚫고 나온 페미니스트

2020년 2월 18일(화) 오후 3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네트워크 포럼

책을 뚫고 나온 페미니스트

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책임연구원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학의 만남, 그리고 현재

여성학과 여성운동, “마르지 않는 샘물”	3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경	
현장기반 연구의 현황과 의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14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연구원 장주리	

연구활동가 발표 세션1

그루밍 성폭력 사건 관련 미디어 담론 연구	33
성공회대 실천여성학 12기 석사 김민주	
가족주의를 통해 부정되는 성폭력: ‘가해자 아내’ 발화의 효과를 중심으로	51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남승현	
젠더 폭력의 (탈)피해자화: 국가와 페미니즘 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67
버클리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박주현	

연구활동가 발표 세션2

HPV 백신의 젠더화와 십대 여성의 섹슈얼리티	77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김보영	
20대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페미니즘’과 그 의미	
: 페미니즘 ‘들’ 속에서 ‘나의 페미니즘’ 만들기	90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석사 오혜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학의 만남, 그리고 현재

여성학과 여성운동, “마르지 않는 샘물”
_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경

현장기반 연구의 현황과 의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_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연구원 장주리

여성학과 여성운동, ‘마르지 않는 샘’¹⁾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경

1. 시작하며

“여성학, 여성운동, 여성정책을 가로지르는 공통의 관심사는 ‘변화’ 혹은 ‘바꾸기’입니다.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의 인권, 해방,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인식, 개념, 관습, 전통, 법,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 변화가 왜 필요한지,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를 논의하고,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떻게 이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상상하고 도전해왔습니다. 때로는 기존의 제도에 들어가서, 때로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가면서. 담론과 실천의 한가운데서 희망과 열정과 용기를 갖고 일해왔습니다.”

- 『나의 페미니즘 레시피(2015)』의 서문 중 -

“지금까지 활동을 하게 된 까닭은 여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제게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던 자신들의 경험을 제게 말했고,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 법이 탄생했고, 반포르노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 (중략)... 여성들이 말하는 것을 기반으로 고민해서 나올 수 있었던 법제도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여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에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피해자들과 이야기하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힘은 생존자들 곁에서 나옵니다.”

- 캐서린 매किन의 여성신문 인터뷰 내용 중 (2019. 12. 16) -

여성들의 삶과 여성학, 여성운동, 여성정책, 여성문화 등은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한 뿌리의 나무들이다. 만약 이중 어느 한 나무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느 한편이 소외된다면 나머지 나무들도 건강하게 생존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마르지 않는 샘물’로 존재한다. 이 샘물 중

1) 이 글은 “반(反)성폭력운동과 여성학의 역동적 만남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을 중심으로”, <여성학과 30주년기념 학술마당 제5세션 : 여성학·여성운동·여성정책,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2013. 2. 16)>와 “여성학과 여성운동, 서로 ‘마르지 않는 샘’으로”, <여성학과 20주년 기념 학술제 제1세션 :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행복한 만남?!(2002. 10. 26)>에서 발표한 글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자료임을 밝힙니다.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성적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꿔가기 위한 활동을 하는 여성인권운동단체이다. 상담창구를 통해 매일매일 성폭력 피해 상담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85,000여회 상담지원을 했다. 이러한 여성운동 현장은 여성주의 이론의 보고(寶庫)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이론과 현장의 관계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반성폭력운동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과 현장의 환류(還流) : 여성학을 하는 페미니스트들이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만들다

가. 여성주의 이론을 실천하는 장 & 실천을 이론화하는 장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한 대학원 여성학과 졸업생과 교수 및 여성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에서 배운 여성학적 지식을 실천하고자 출발했다. 56명의 창립멤버들은 “이제 한국 사회에도 외국의 강간위기센터처럼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성폭력상담소가 필요한 때”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8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1991년 4월에 문을 열었다. 상담소가 이와같이 성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운동단체로 출발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여성의전화(1983), 여성평우회(1983), 한국여성민우회(1987), 한국여성단체연합(1987), 한국여성노동자회(1987) 등의 여성단체가 전반적인 여성운동을 수행해오면서 토대를 닦아온 덕택이었다.

당시 여성학 연구의 대부분은 노동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데 반해, 섹슈얼리티(sexuality)분야는 이제 막 시작단계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정관에 명시하고 있듯이 ‘성폭력피해자를 상담 지원하고 새로운 성문화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통해 여성의 인권을 확보하고 성평등 사회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철학으로 출발했다. 여성학은 여성의 불평등과 차별, 인권침해를 여성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이론화해 평등한 사회로 변혁을 꾀하는 실천적 학문이라는 점에서 이론과 실천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고, 성폭력상담소는 그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안이었다(최영애, 2011). 지난 30여년동안 여성학 전공자들이 상담소 활동가가 되거나 상담소 활동가가 여성학을 공부하는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관련 연구도 1989년 강간을 주제로 한 세 편의 석사학위 논문(김선영, 1989; 박선미, 1989; 이명선, 1989)을 시작으로 성희롱, 강간의 판단기준, 성폭력 2차피해 등 다양한 연구들도 이어지고 있다.

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소 조직의 확대·변화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열고 전화번호가 알려지면서 눈코 뜰 사이 없을

정도로 많은 상담전화들이 걸려왔다. 상담창구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는 한 할머니부터 “바로 어젯밤 내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 사례들이 연이어 접수되었다. 당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성폭력상담소가 없으니 상담 요청이 몰릴 수밖에 없었다. 야간에도 상담 창구를 열 필요성을 느껴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성폭력위기센터를 1993년 12월에 열었다. 그때 대학생 자원 활동가들을 모아 상담원 교육을 해 이들이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조를 짜 밤을 새며 상담했다. 그러다가 2000년에 전국적으로 성폭력상담소가 170여 개소로 늘어났고, 1998년부터 여성위기전화 1366이 생겨 24시간 상담하는 기능이 분화됐다. 또한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면서 당시 독일 EZE(Evangelische Zentralstelle für Entwicklungshilfe e.v.)에서 제공한 지원도 끊겨 성폭력위기센터는 2000년에 운영을 마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사례에는 쉼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상담사례 중 10~12퍼센트 정도가 근친성폭력 피해인데 이런 경우 거처를 분리해야한다. 약 1년간 준비 과정을 거쳐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새롭게 삶을 열어가는’ 의미의 열림터가 1994년 9월에 문을 연 이래 지금까지 25년동안 여성주의 쉼터로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상담소에서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좀 더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97년에는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를, 1998년에는 ‘21세기 미디어운동센터’와 ‘성평등교육문화센터’ 등을 개소해 활동하다가 2006년에 해소했다. 그리고 2004년에는 ‘하담’이라는 자립지공동체를 열어 열림터에서 퇴소한 생활인들이 자립하기 이전까지 중간집 형태의 쉼터를 3년간 운영하기도 했다. 연구소는 2009년에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가 2014년에 ‘올림’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다. 여성주의 가치를 실천하는 조직의 추구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설립 초기부터 ‘여성주의’ 가치를 실천하는 조직을 꿈꾸었다. 여성주의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존재인데도 여성들이 착취·억압당해온 것을 문제시하고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즉, 사회구성원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꿈꾼다. 따라서 한국성폭력상담소라는 조직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평등한 지위를 갖고 활동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조직에서의 소장, 부소장, 총무, 간사 같은 상하 위계관계를 탈피해 좀 더 평등한 관계를 나눌 수 있는 형태를 고민해왔다. 그러나 구성원들간에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통하겠다는 철학을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조직 구도에는 장·단점이 있다. 모든 의사결정에 민주적 합의를 하고 서로 평등한 관계 안에서 활동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현실에서는 민주적 합의와 효율이 항상 같이 가지 않고 더러 혼란스러울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한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서 이끌고 가는 것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에 시간과 노력을 너무 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다. 또한 사안마다 따르는 책임의 소지가 불분명해 혼란이 일기도 한다. 그러나 조직운영이 ‘효율성, 합리성’이라는 미명아래 소중한 ‘평등’의 가치들은 포섭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늘 민감성이 요구되고, 조직구성원들도 건강한 비판의식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라. ‘피해자화’의 성찰

상당사례 지원 시 이른바 ‘피해자답지 않은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을 때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얼마나 극심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고 여기에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성폭력의 판단기준으로 보는 ‘최협의설’이 여전히 지배적이기에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화’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통념에 일조한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다운 피해자라면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불행한 사람’이며 그들의 행동은 ‘이러이러 할 것이다’라는 ‘피해자상’을 정하고 있다. 특히 데이트 성폭력처럼 정형화된 성폭력 범주에 속하기 어려운 경우들은 아예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문제는 지금 반성폭력 운동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상담소의 부설연구소 울림(2015)에서는 2년동안의 상담일지, 피해자 심층면접, 설문조사를 분석해 「우리가 말하는 피해자란 없다-성폭력 통념 비판과 피해 의미의 재구성」이라는 포럼을 통해 우리사회의 통념을 비판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 피해자(victim)라는 용어가 우리사회에서 나약하고 소극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자는 치유를 향한 강한 힘, 용기, 지혜를 지녔고, 수사·재판·진료 및 보도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 생존자(survivor)라고 명명하고 있다. 생존자 개념이 생소하고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성폭력을 경험한 ‘경험자’로 명명하자는 제안들도 있다. 이런 다양한 논의들 속에서 더 적합한 개념을 찾으려는 노력이 운동의 힘을 키우는 의지로 이어지리라 본다.

마. 현장 경험의 기록, 그리고 이론화의 의미

반성폭력 운동 현장의 경험들은 기록되고 이론화되어야 한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에 의해 기억된다’는 말이 있듯이 소중한 활동경험들이 기록되지 않은 채 소멸되는 것이 운동현장의 현실이다.²⁾ 반성폭력 운동 현장에서 느꼈던 환희의

2) 정현백(2017)은 단행본 『한국여성단체연합 30년의 역사』의 서문에서 그동안 현장 활동가들의 증언, 평가, 서술 자료가 희귀한 이유를 “활동가들의 끔찍한 과중노동에서 자료수집과

순간뿐 아니라 절망했던 순간, 잘못 판단해서 호된 대가를 치러야 했던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들이 날날이 기록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 활동가들이 그 경험의 의미 위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흔히 이론은 학자들에 의해 전유된다. 연구방법론에서 누구의 시각에서 이를 그려내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성폭력 상담현장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많은 이야기를 펼쳐내는 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한 예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식지인 「나눔터」에 연재되었던 친족성폭력피해자의 경험을 글쓰기를 통해 풀어낸 “수(水)의 이야기”는 2012년에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는 단행본으로 발간되어(현재 12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제는 생존자가 직접 글을 쓰거나 영상물을 만드는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각 상담소의 여러 운동경험은 물론 일상적인 상담일지도 전혀 분석·연구되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다. 간혹 학자들이 연구 논문을 쓰고 싶다면서 상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지 문의하기도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경우에는 외부 연구진에게 폐쇄적인 편인데, 생존자의 비밀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상담이 아니라 일상적인 성문화를 바꿔가는 활동을 위해서는 좀 더 객관화된 눈으로 살펴보려는 이론화 시도에 과감하게 문을 열 필요도 있다. 물론 상담일지를 활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에 기반한 엄격한 연구기준과 연구자 윤리 등을 요하는 사안이다. 간혹, 피해자 자신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거나 기꺼이 연구 대상이 되려는 분들도 있지만, 정작 이를 펼쳐갈 장은 부족하다. 여성주의 상담, 2차 피해, 최협의설, 판례평석, 군대 내 성폭력, 제도화와 자율성, 성폭력 피해 의미구성, 공소시효 문제, 직장 내 성희롱, 유형별 성폭력의 문제점과 특성, 우리나라 각 상담 현장에서 드러나는 특성,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 여성의 재생산권 등의 주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론화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의 판단 기준으로서의 객관성 문제, 합리적 인간(여성)의 관점, 피해자 중심주의, 여성의 힘 기르기, 자기방어, 다른 몸 되기 등을 과연 어떻게 정리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각각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토론하고 새롭게 인식할 계기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론화에서 곧잘 발생하는 문제는 연구과정에서 생존자의 주체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연구자가 우위를 점하면서 생존자를 대상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생존자들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고통스러운 과거와 직면해야 하는데 실제 연구는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며,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와 참여자가 어떤 식으로 힘과 용기를 주고받는지, 해당 연구로 인한 구체적인 성장과 변화는 가능한지 등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 성과물을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지, 연구자와 활동가가 어떤 긴장관계와

진술의 여유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협조관계를 형성할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현장의 활동이 이론화 되는 학술논문이 드물게 나오기도 하는데, 주로 연구자들에 의해 쓰여지고 있어 활동가들이 겪는 박탈감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도 좀 더 솔직하게 드러내고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한다. 연구의 당위나 필요가 명백하더라도 어느 한쪽의 일방 통행적 연구 관행은 문제가 되므로 생존자, 내부 활동가, 외부 연구자가 균형을 유지하며 연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활동가들의 전문성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문성이 무엇인지 개념정의부터 새롭게 하지 않고는 늘 전문가는 학자만의 전유물이 되고 활동가는 보조자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³⁾

3. 현장과 담론의 순환 사례 :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운동

그동안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초반에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범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한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운동 3년만에 국회를 통과해 현재 성폭력관련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외에도 성폭력 2차피해,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배제 및 연장을 위한 활동에는 1차적으로 상담현장의 실태분석이 기반이 되었다. 이 장에서는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운동을 중심으로 어떻게 현장과 이론, 정책이 만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운동은 2005~7년까지 ‘여성인권법연대’에서 오랜 논의 끝에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원을 섭외하고 발의하였으나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한채 회기만료 자동폐기된 이후 12년만에 재게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2006~7년까지 13개월동안 매월 여성주의 시각으로 한 판례평석을 대법원의 대법관과 전국의 판사, 검사들에게 자료집으로 발송했던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가. 연대회의 결성의 배경

2018년 혁명처럼 일어난 #미투운동은 우리사회가 성폭력을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형법 제297조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피해 당시 얼마나 극심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고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는지를 요구하는 ‘최협의설’

3) 이에 대해 권미혁(2011)은 <제1회 여성대회>에서 “누가 전문가인가? 현장 활동가가 자신의 현장이 바로 전문성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연구자들과의 보다 긴밀한 협업을 모색하자”는 제안을 했다.

을 강간죄의 판단기준으로 고착화시켜온 것이 있다. 이러한 강간죄 판단기준은 성폭력 피해자를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로 이분화하고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의심하는 문화를 양산해왔다. #미투운동 이후 국회에 상정된 법안만해도 150여개가 넘고 ‘강간죄’ 구성요건을 다룬 ‘비동의간음죄’ 관련 법안도 10개이지만, 발의 이후 제대로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따라서 #미투운동의 의미를 살리고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결국 “성폭력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되돌아가 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성폭력의 의미구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즉, 성폭력의 판단기준은 더 이상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바꾸는 가열찬 운동이 필요하다.

나. 활동 목표

최협의설이 실제 형사사법절차에서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2017~8년의 성폭력 판례분석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 폐해를 널리 알리고,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운동 펼쳐가는 것을 목적으로 2019년 3월 21일 전국 209개 여성인권단체가 함께하여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결성했다.

다. 활동 내용

현재까지 13번의 연대회의와 13번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발의를 제안했으나, 총선시기와 맞물려 20대 국회에서는 발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후 총선대응 및 21대 국회에서 지속적인 법안 개정을 목표로 활동하고자 한다. 2019년 연대회의 활동 중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들에게 5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보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표 1]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국회 법사위에 보낸 의견서

차수	일시	내 용
1	19. 3. 30.	“형법 제297조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는 총괄적인 내용
2	19. 7. 9.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전체 66개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735명)에 달한다는 분석을 통해 ‘최협의설’의 폐해를 지적
3	19. 8. 13.	국제법 및 해외입법례에서의 강간죄 판단기준을 소개
4	19. 9. 18.	무고죄 역고소 과정에서의 ‘최협의설’의 문제점 지적
5	19. 11. 11.	무죄판결지원사건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결과 분석

이 의견서는 각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초안을 작성하고 전체회의에서 수정·보완하여 최종안을 완성했다. 특히 전국성폭력상담소 66개소의 2019년 1~3월까지의 강간 피해 상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 사례는 71.4%(735명)에 달한다는 분석을 통해 ‘최협의설’의 폐해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주장의 최신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외에도 국회 정론관, 국회 앞 등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함께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더불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이 거버넌스를 통한 강간죄 개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NGO활동에서 정부와의 거버넌스는 ‘양날의 검’처럼 긴장이 있었다.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으로 마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①항)는 법규까지 있지만, 실제 이행과정은 NGO의 참여자체를 고민해야 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다. 여성 위원들의 참여가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회의 내용이 다 짜여진 정책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함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각 부처의 개혁을 위한 위원회들이 마련되었고 이러한 위원회 활동에서 성평등 관련 논의도 시작되었으며, 미투이후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강간죄 개정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의 간담회와 의견서 등의 형태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더불어 국회 각당 대표 및 법무부, 대검찰청 등 정부대상 압박활동을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공동으로 진행했다.⁴⁾ 이러한 활동에는 2018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한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부분의 7가지 권고사항 중 첫 번째인 강간죄 개정에 대한 권고내용⁵⁾이 매우 유용한 근거자료가 되었다. 사실 이러한 UN의 권고를 받기까지 NGO 활동가들의 사전 의견서 제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 모니터링과 발언, 위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 등의 다양한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7인의 국회의원 및 정당과 공동주최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라는 토론회를 개

4) 2019/9/04(수) 오후2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면담 / 9/06(금) 오후 3시, 대검찰청 형사부장, 형사2과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면담(* 예정되었던 검찰총장면담은 당일 취소됨) / 9/17(화) 오전 11시10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면담 / 9/19(목)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면담 / 9/25(수)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방문 & 보좌관 면담(법안 발의 관련)

최해(2019. 11. 13.)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회를 실제적으로 압박하는 활동을 했다. 기타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등의 다양한 활동도 병행했다.

4. 맺음말 : 새로운 상상력을 펼쳐다

이상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우리나라 반성폭력운동은 그 출발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여성학과 여성운동, 여성정책이 서로 교차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 이제 어느 정도 틀을 갖춘 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외적 성장이 실제 여성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해당 법과 제도가 실제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이로 인해 일상에서 성폭력 예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법제정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척도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 하나하나의 이행과정을 담당자의 인식점검에서부터 시작해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운동현장에서는 반성폭력 법과 정책의 지향점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반성폭력 법제화에서 ‘성폭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왜 성폭력을 반대하는지 등의 근본적인 물음들에 다시 직면해야 한다. 성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한다는 인식은 우리사회가

5) [표 2]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내용

<p><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 :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분야 ></p> <p style="text-align: center;">- 2018. 3. 9 -</p> <p>a. 「형법」 제 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특히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p> <p>b.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목적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 보장이 되도록 개정할 것.</p> <p>c.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과 같은 형사소송절차 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사법 절차에서 성 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금지할 것.</p> <p>d.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명확히 범죄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p> <p>e.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 체계를 수립하고, 가해자에 대한 의무적인 징계 조치 이행할 것.</p> <p>f. 학교, 대학, 군대 등 공공 기관에서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보장하고 신고와 상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철저한 비밀유지를 보장할 것.</p> <p>g. 성폭력 피해를 겪은 여성들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치료와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들을 위한 센터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할 것.</p>
--

피해생존자를 ‘보호할 대상’이거나 ‘의심과 비난’하는 양극단으로 위치 지우는 것에 대응할 근거를 열어주었다. 또한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현실은 젠더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진단할 수 있게 했다. 나아가 여성학적 접근은 성폭력이 성충동에 의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좀 더 힘(권력)있는 사람이 그 힘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인권침해라는 점은 성폭력문제의 심각성과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지금까지 법·정책에서 성폭력 문제해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아직 대중과 호흡을 통한 일상의 실천을 끌어내지는 못한 이유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대중들이 인식하는 성폭력이 과연 인권존중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무력하고 불쌍한 피해자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의 접근인지를 살펴봐야한다. 그동안의 처벌강화 위주의 법·정책이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노력은 하지 못했음을 이를 반증해준다. 이제 성폭력 관련 법과 정책에 ‘여성의 눈으로’, ‘피해자의 경험으로’ 출발하는 새로운 상상력과 열정이 필요하다. 그 상상력과 열정은 반성폭력 법·정책운동가들이 꿈꾸어왔던 것들을 조금씩이나마 현실로 만들어 왔던 현재의 성과를 넘어, 진정한 변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이론과 현장의 긴밀한 유대와 환류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 포럼에서 다음 사항을 함께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원활한 이론과 실천의 순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예를들어 여성운동가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구조적인 지원이나 인턴십제도, 연구공유를 위한 정치화 등을 들 수 있겠다. 둘째, 여성학연구자와 활동가의 전문성 인정을 어떤 정치화가 필요한가. 활동으로 쌓인 경험과 노하우, 자료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나 박사가 아닌 활동가들은 전문가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의 도전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운동의 현장의 현안들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을까. 지방과 중앙의 격차, 활동가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과 일·성과중심의 운동방향, 제도화 대응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운동현장의 R&D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할까 등이다. (* 이상)

< 참고한 자료 >

- 권미혁(2011), “2011년 여성연합은 안녕하지 못하다”, 「2011 여성회의-여성운동 새로운 전환의 모색」, 토론회 자료집(2011. 4. 28) 한국여성재단·한국젠더 네트워크.
- 김선영(1989),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박선미(1989), “강간범죄의 재판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이명선(1989),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 피해여성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이미경(2002), “여성학과 여성운동, 서로 ‘마르지 않는 샘’으로”, 「여성학과 20주년 기념 학술제 제1세션 :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행복한 만남?!」 토론회 자료집(2002. 10. 26). 이화여대 여성학과 동창회.
- _____ (2013), “반(反)성폭력운동과 여성학의 역동적 만남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을 중심으로”, 「여성학과 30주년기념 학술마당 제5세션 : 여성학·여성운동·여성정책,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토론회 자료집(2013. 2. 16)>, 이화여대 여성학과.
- 장필화 외 15인(2015), 『나의 페미니즘 레시피』, 서해문집.
- 정현백(2017), “서문”, 『한국여성단체연합 30년의 역사』, 한국여성단체연합, 당대.
- 최영애(2011),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운동에 새 길을 내다”, 『성폭력 뒤집기 :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이매진.
- 한국성폭력상담소(2007),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관례바꾸기 운동」 자료집 모음.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2015), 「우리가 말하는 피해자란 없다-성폭력 통념 비판과 피해 의미의 재구성」 토론회 자료집(2015. 4. 23).

현장기반 연구의 현황과 의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¹⁾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연구원 장주리

1.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소개

울림은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이래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을 지원하며 축적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반성폭력 이론, 남성중심적 문화, 성폭력 관련 법·정책·제도를 분석하고 변화를 제안하는 연구소입니다.

지난 30여년 간의 반성폭력운동 및 미투운동의 결과로 전국적으로 성폭력피해자 지원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구분별한 성폭력 보도를 경계하고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대중의 의식을 바꾸며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실천들은 여전한 과제입니다. 성폭력은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와 조직 내 성차별적인 구조와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유발론과 같은 성폭력 통념은 아직도 만연합니다. 반성폭력 운동은 성폭력 예방, 사건 지원, 왜곡된 성문화를 바꾸기 위한 실천과 더불어 기존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여성주의적 언어와 이론의 생산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연구소 울림은 현장의 언어들을 바탕으로 반성폭력 이론을 생산하고 연구물을 대중과 운동현장에 다시 공유함으로써 이론과 실천의 변화와 순환, 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연혁

-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 1997년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 2009년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해소
- 2014년 부설 연구소 울림 개소

○ 부설연구소 울림의 주요 활동

- 성폭력에 대한 통념변화와 새로운 담론 생산을 위한 연구 진행
- 반성폭력 운동의 현황 및 성문화 개선을 위한 연구
- 법, 정책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연구

1) 이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김보화, 연구원 장주리가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 성폭력 피해와 가해에 대한 담론 바꾸기 연구
 -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분석
 - 기관 내 성문화, 성희롱, 성폭력 실태 조사 및 자문, 의견, 강의 등
- 반성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포럼과 출판 활동
 - 연구 간행물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출판
 - 정기적인 공개 포럼 개최
 - 국외 연구 자료 번역 및 출판
 - 성폭력 이론 관련 서적 출판

2.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연구활동 내용(1991~2019)

명칭	연도	교육	연구 및 포럼	번역출판
조사 연구부	1991	1. 여름세미나 공동주관: 주제 - 「어린이 성폭행」 2. 교육자료 공동발간: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하여」		
	1992	1. 정기 세미나: 데이트 강간, 직장내성폭행		1. Global Fund Project. 1: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소책자 발간 2. 동아일보 Project: 『일그러진 성문화, 새로보는 성』 책 발간
	1993	1. 정기 세미나: 개소 2주년 기념 자료집을 위한 워크샵	1. 개소 2주년 기념 자료집 발간	
	1995		1. 직장내 성폭력 상담 실태분석	1. 어린이성폭력 관련 외국자료 번역 2. 홍콩의 성폭력 관련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자료 번역

명칭	연도	교육	연구 및 포럼	번역출판
	199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소 5주년 기념세미나 「성폭력특별법 적용실태와 개정방안」 연구 및 자료집 발간 2. 「안전한 어린이 건강한 서울: 어린이성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세미나」 및 자료집 발간 3. 『청소년 성문화 및 성폭력 실태조사』 4.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및 대책」 세미나 개최 및 자료집 발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 어린이성폭력 예방지침서 - 부모와 교사용』 자료집 발간
조사 연구부 → 97.7. 1. 부설 성폭력 문제 연구소	199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캠프> 실시 2. 성폭력 가해자 교육 3. 사회실습생 및 사회봉사 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 성교육 모델개발> 사업 2.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기념 세미나: 국내외 성폭력 연구동향 및 지원체계」 3. 「시민대토론회: 성문화와 성폭력에 미치는 음란물의 영향」 실시 	
	199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소 개소 1주년 기념 <성교육 교사 훈련 워크샵> 2. P여고 여성문학반 1년간 성교육 실시 3. 성폭력 가해자 교육 4. 사회실습생 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폭력에 대하여 알아야 할 몇 가지 것들: 예방과 대처』 발간
	199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홀썩 크는 캠프: 향락산업에 노출된 10대 여자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98년 직장내 성희롱 상담사례 분석 2. 「남성의 성문화 실태조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행본 『섹슈얼리티 강의』 발간 2. 「새로운 직장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일반

명칭	연도	교육	연구 및 포럼	번역출판
		그림> 2. 성폭력 가해자 교육	3. 「십대의 성산업 유입과 남성 성문화」 세미나 4. 『성폭력 상담 전국 통계조사』	직원과 관리자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침서」 발간
	2000	1.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1. 단행본 『아주 특별한 용기』 번역 및 발간
	2001		1.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사업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조사 - 직장내 성희롱 2차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직장내 성희롱 상담원 양성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가 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훈련 프로그램 - 전국 제조업체 노동자 대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개발	
	2003	1. 초등학교 고학년 성폭력 예방 애니메이션 비디오 제작 2. 중학생 성교육 교사 연수 프로그램 실시: <중학생과 ‘성’으로 즐겁게 만나기 워크샵>	1. 법조인의 성평등·성인식 조사 연구 사업 - 법조인 성인식 조사 사업 - 법조인의 성별의식과 양성평등교육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2.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2004	1. 초등학교 고학년 성		1. 「으랏차차 청소녀를

명칭	연도	교육	연구 및 포럼	번역출판
		<p>폭력예방 비디오 <우리들의 약속> 시사회</p> <p>2.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 비디오 제작</p>		<p>위한 호신가이드북」 발간</p>
	2005	<p>1. 10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위한 영상물 제작</p> <p>2. <10대 여성을 위한 으랏차차 호신대작전></p>	<p>1. 성폭력피해자 치유,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개발</p>	
	2006			<p>1.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발간</p>
부설 연구소 울림	2013	<p>1. 예비의료인의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p>		
	2014		<p>1. A조직 내 성의식·성폭력 사례 실태조사</p> <p>2. 연구소 개소 기념 포럼 <성폭력, 두려워해야 하는가?: 성폭력 두려움에 대한 인식 현황과 평가></p>	<p>1. 『괴물이 된 사람들: 아홉명의 아동 성범죄자를 만나다』 번역 및 출판</p> <p>2. 『당하지 않겠어!』 번역 및 출판</p>
	2015	<p>1. 성폭력 연구 월례포럼</p>	<p>1. 성폭력피해에 대한 인식 전환과 피해자 다움 극복을 위한 연구</p> <p>2. 성폭력피해에 대한 인식 전환과 피해자 다움 극복을 위한 연구 - 논문 발표</p> <p>김민정, 2015, “지각된 성폭력 고정관념이 성폭력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 자기비하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3(3)</p> <p>2. A대안학교 내 성의식·성폭력 실태조사</p> <p>3. 아동 성교육 및 성폭</p>	<p>1. 『그것은 썸도 데이트도 섹스도 아니다』 출판</p>

명칭	연도	교육	연구 및 포럼	번역출판
			<p>력 사안에 대한 초등 남자아동을 둔 부모의 인식과 대응 연구 논문게재</p> <p>권인숙, 2015, “초등남학생 엄마의 남아성폭력 관련 불안(두려움)의 젠더적 특성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25(1)</p>	
	2016	1. 『그것은 썸도 데이트도 섹스도 아니다』 대학 특강 진행	<p>1. 성폭력피해에 대한 인식 전환과 피해자 다움 극복을 위한 연구 논문게재</p> <p>권인숙 외, 2016 “성폭력 피해 통념이 피해자 트라우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젠더와문화, 9(2)</p> <p>추지현, 2016, “성/폭력의 중층 피해와 젠더”, 한국여성학, 32(4)</p> <p>유현미, 2016, “사회적 고통으로서 성폭력피해의 의미구성과 젠더효과”, 페미니즘 연구, 16(2)</p> <p>2. 길거리괴롭힘 실태분석 연구포럼 <공공장소 SEXISM: 소수자 괴롭힘과 시민성></p> <p>3. A공사 성의식 실태조사</p> <p>4. <한국 상담가의 성 윤리의식 실태와 내담자 법적 보호 현실> 국회포럼</p>	<p>1.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0호 발간</p> <p>- 기획특집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5주년 특별 좌담회: 한국 반성폭력 운동과 이론의 역사, 그리고 과제</p> <p>- 상담일지 분석: '길거리 괴롭힘' 상담통계 분석</p> <p>- 쟁점과 입장 혐오라는 가랑비, 내 젖은 옷을 말리는 방법에 대하여 '여성혐오범죄'라는 명명이 드러내는 '여성안심'대책의 빈 공간</p> <p>'치정'과 '멜로', 그 경계에서 데이트 폭력을 묻다</p> <p>- 성폭력 관련 학술지/연구물 목록 (2015~2016년 상반기)</p> <p>2. 『미녀, 야수에 맞서다』 번역 및 출판</p>
	2017	1. 성폭력 가해자 연구회원 세미나 진행	<p>1. 성폭력피해에 대한 인식 전환과 피해자 다움 극복을 위한 연구 논문게재</p> <p>추지현-권인숙, 2017, “가해자와의 관계가 피해자의 성폭력후유증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 통념경험의 매개효</p>	<p>1.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1호 발간</p> <p>- 기획특집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가해: 디지털 성폭력</p> <p>- 상담일지 분석 디지털 성폭력에 맞서다: 2015~16 카메라 이용 활</p>

명칭	연도	교육	연구 및 포럼	번역출판
			<p>과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48</p> <p>김보화·추지현·이미경, 2017,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따른 피해자의 성폭력 통년 경험”,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25(2)</p> <p>김민정·권인숙·김선영, 2017, “성폭력피해의 치명성 낙인이 피해자다움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 - 성폭력 후유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25(3)</p>	<p>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상담통계 분석을 중심으로</p> <p>- 쟁점과 입장</p> <p>‘이미지 착취’(Image Exploitation) 성폭력 실태와 판단기준에 관한 비판적 분석</p> <p>‘보복 포르노’(Revenge Porn) 관련 처벌 사례 및 입법 소개</p> <p>디지털 성폭력 처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 <p>- 최신연구동향: 2016 성폭력·성희롱 관련 연구물 동향 리뷰</p> <p>-기고</p> <p>인도의 반성폭력 여성주의 운동 :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도전</p> <p>- 서평</p> <p>『미녀, 아수에 맞서다』 서평</p> <p>『미녀, 아수에 맞서다』 역자소감</p> <p>2.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발간</p> <p>3.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제작</p>
	2018		<p>1. 성폭력 역고소 연구 포럼 <의심에서 지지로, 성폭력 역고소를 해체하다></p> <p>2. 『성폭력 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지원방안 연구』</p>	<p>1.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2호 발간 - 주제: 성폭력 역고소</p> <p>- 기획특집</p> <p>“성폭력역고소의 현시점을 묻다”: 성폭력역고소를 해체하기 위한 반성폭력 활동가 연구자 전략 좌담회</p> <p>- 상담일지 분석</p> <p>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역고소 상담일지분석: 5년간 상담통계와 1년간 상담사례를 중심으로</p> <p>- 쟁점과 입장</p> <p>성폭력역고소의 상업화와 ‘보복성 기획고소’</p> <p>미투운동과 사실적시명예훼손/페지문의 충돌</p> <p>3.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p>

명칭	연도	교육	연구 및 포럼	번역출판
				<p>자를 선별하는 성폭력무고 수사과정의 문제</p> <p>- 기고</p> <p>안희정성폭력 1심 판결문 비판 문화예술계 성폭력: 법과 제도의 시각지대 속에서 대응지원으로 맞서다</p> <p>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기</p> <p>난민은 페미니스트 의제인가?</p>
	2019	1. <KSVRC 활동가 역량 '뽐뽐' 프로그램>	<p>1. 성폭력 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지원방안 연구 후속 논문게재</p> <p>김보화, 2019, “성폭력 상담일지를 통해 본 2018년 한국 미투운동의 의미”,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연구, 19(2)</p> <p>허민숙, 2019, “보통의 강간: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 상담일지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35(4)</p> <p>2. 성폭력 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 지원방안 분석 연구포럼 <‘미투’가 말한 것, 말하지 못한 것></p>	<p>1.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3호 발간</p> <p>- 기획특집</p> <p>‘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운동의 의미와 쟁점</p> <p>- 쟁점과 입장</p> <p>강간죄 개정의 필요성: 최협의 설의 극복, 어떻게 할 것인가</p> <p>강간죄인가, 준강간죄인가?: 분열된 법 규정과 피해경험의 왜곡</p> <p>미투운동 이후 담론 전략들의 쟁투와 반성폭력운동의 과제: ‘안희정 사건’의 재판과정을 중심으로</p> <p>- 상담일지 분석</p> <p>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폭행·협박 없는 강간 사례 상담일지분석</p> <p>- 연구동향분석</p> <p>성폭력 관련법 개정 및 성적 동의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 2017년~2019년 8월까지를 중심으로</p> <p>- 기고</p> <p>지역의 미투운동: 함평·장성 ‘언니들’을 만나다</p> <p>고등군사법원이 질문해야 했던 것: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쟁점</p> <p>낙태죄 폐지 이후,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방향 모색</p> <p>- 서평</p> <p>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스스로 해일이 된 여자들』 서평</p>

[참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조사·교육·연구활동(1991~2019)

연도	연구목록
1991	1.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김영오 사건 자료집
1994	1. 세계 성폭력 추방주간 기념 심포지움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1995	1.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림터 개설 1주년 세미나 <내일을 여는 열림터> 2.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4주년 기념 자료집 <함께하는 위기센터를 위하여>
1997	1. 성폭력에 관한 법률지침서
1998	1. 당당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여성: 영업직 여성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 2. 21C 여성 미디어 운동센터 발족기념식 및 발족기념 토론회
1999	1. 성폭력사건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경찰간담회 2. 「건강한 성 만들기」: 중학생 성교육 지침서 3. 열림터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 4. 포르노, 여성, 미디어
2000	1. 스포츠에서의 성차별적 관행 개선을 위한 토론회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 3.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 진료 및 수사 4. 피해자를 위한 가정폭력 수사 및 진료 5.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및 대책
2001	1. 대학내 성폭력 관련 정책 2. delete! 사이버성폭력 발간 3. 사이버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사이트운영자 교육 4.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5. 통합적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성폭력·가정폭력 쉼터 활동가를 위한 심화 워크샵
2002	1. 인터넷을 이용한 성폭력 상담의 현황과 과제 2. 인터넷을 이용한 성폭력상담 매뉴얼 3. 여성폭력추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긴급토론회
2003	1. 성폭력 근절, 남성도 똬다!: 남성들을 위한 성폭력 근절 가이드북 2. 성폭력 보도과정에서 2차피해 없는 방송문화 만들기 3. 성폭력에 대하여 알아야 할 몇 가지 것들: 예방과 대처 4. 새로운 직장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침서 5. 성폭력에 관한 의리지침서 6. 성폭력 관련 공판에서의 2차피해와 피해자권리
2004	1. 반성폭력운동의 성과와 과제 2. 어린이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 3. 친족성폭력 지원 상담자 워크샵 4. 성폭력 사건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5. 보호시설입소 성폭력피해 생존자 지원현황과 과제 6. 통합과 회복을 향한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상담매뉴얼
2005	1. 성폭력 관련 법적 쟁점 워크샵

	2. 회식자리 술따르기 강요 성희롱 항소심 평석회: 회식자리 술따르기 강요가 왜 성희롱인가?
2006	1.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관례바꾸기 운동 2.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한 토론회 3. 성폭력에 대한 평화-인권운동 토론회: 운동사회 내 성폭력을 다시 묻다
2007	1. 여성주의 관점의 성폭력 관례비평 2.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3. 여성주의 상담, 나침반을 찾아라 4.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위한 법률지침서 5. 자립지지공동체 ‘하담 3년 돌아보기’ 6.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관례바꾸기 운동 7. 『성폭력, 법정에 서다』
2008	1.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 2. 2008 릴레이 시민토론: 어린이성폭력·간통죄·성희롱판단기준·낙태금지법 3. 대안을 찾아가는 토론회: 아동·청소년 성폭력 2차피해, 국가책임을 묻다 4. 직장내 성희롱 개념, 인권 당사자에게 묻다
2009	1.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을 위한 가이드: 실전처럼 연습하고, 연습처럼 대응하라! 2. 으랏차차 청소년을 위한 호신 가이드 3. 『성폭력에 맞서다 - 사례·담론·전망』
2010	1. 성폭력피해생존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젠더감수성교육: 성폭력, 얼마나 알고 계세요? 2. 성폭력가해자 상담원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2011	1. 성폭력피해생존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젠더감수성교육: 아이들의 성폭력? 아는 만큼 보인다! 2. 성폭력가해자 상담원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성폭력 가해자, 어떻게 만날까? 3.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0주년 기념 토론회: 성폭력 정책, 현장에서 듣다 4.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젠더감수성 Q&A 5. 『보통의 경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 6. 『준비된 부모를 위한 성교육 Q&A: 거침없는 아이 난감한 어른』 7. 『성폭력 뒤집기: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 회고와 전망』
2012	1.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증인보호와 지원방안 2. 성폭력 사건 지원자를 위한 심화교육: 널뛰는 성폭력 관련법 따라잡기 3. 젠더감수성 교육: 우리에게 젠더감수성이 필요한 이유 4. 반성폭력운동의 미래전망, 국제연대에서 찾다 5.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반성폭력 정책 제안서
2013	1.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 2. 성폭력피해생존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젠더감수성교육 매뉴얼: 지금 시작하는 젠더감수성

	3.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10주년 포럼: 세상이 들어라 나는 말한다, 이후 10년
201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토קי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토론회 2. 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 매뉴얼: 난다 댄다 다른 몸 3.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안내서 4. 직장 내 성희롱 이후, 일/파/만/파: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를 통해 본 대안 모색 토론회 5. 『우리들의 삶은 동사다: 친족성폭력생존자와 열림터, 함께 말한다』
201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대토론회 2. 대/토/론/회 -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201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토론회/좌담회/모의법정 2. 개소 25주년 기념 한일세미나: 성폭력 피해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의 전망 3. NO경직!라운드테이블: 성교육을말하다 4. 강남 ‘여성 살해’ 사건 관련 긴급 집담회: 대한민국 젠더폭력의 현주소
201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요한 성폭력 판결 시리즈: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 2.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토론회 및 모의법정 3.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의미와 쟁점> 토론회 4. 3.8세계여성의날기념 젠더폭력 근절 정책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밝히다
201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법촬영 편파수사의 젠더 정치> 긴급토론회 2. 선거과정에서의 혐오표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3. [긴급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2차 피해 -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 4. [의지로 프로젝트 집담회] 피해와 생계 사이, 직장 내 성폭력을 말하다 5.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201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토론회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2.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3.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개토론회: 낙태죄 폐지 2라운드 4.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사건 2심 판결 쟁점분석 변호인단 간담회 5. 분노가 지나간 자리, 다시 무대에 서다: 이운택 성폭력사건 대응의 의의와 쟁점 토론회 6.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 성폭력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7.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8. 열림터 25주년 기념 포럼: 보호의 쉼터에서 삶의 기반을 만드는 공간으로 9.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

3. 현장기반 여성주의/반성폭력 연구의 의미와 필요성

- 국내 여성인권 관련 연구기관들이 존재하지만, 피해자들의 실제 경험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연구는 많지 않고, 현장에 대한 이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주제라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이론 속에 머무는 경우들이 존재함
- 지난 30여년 간 반성폭력운동단체들은 상담통계 및 피해자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법과 제도의 제/개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해왔음. 예를 들어 부설연구소 올림은 최근 최협의설 폐지의 필요성과 현황을 알리기 위해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3호에 “2018년 폭행, 협박없는 성폭력 상담일지 분석(2019년)” 등을 진행함으로써 당면한 이슈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내 왔음
- 현장기반 연구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외화함으로써 대중적, 이론적, 법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기획적 방식으로 확장되는 성폭력 역고소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2017년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발간하여 역고소 피해자와 지원자들에게 대응 정보를 제공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의심에서 지지로 : 성폭력 역고소를 해체하다>의 포럼 등을 개최하면서(2018년)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부추겨지는 성폭력 역고소와 가해자 연대”라는 제목으로 학회지에 게재함으로써 반성폭력 연구의 분야를 확장해오기도 함. 이와 관련하여 관련 변호사법의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고²⁾ 각종 언론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지면서³⁾ 운동과 연구의 영역을 확장해 왔음
- 2018년에는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투운동의 현황을 알리고, 변화의 방향을 제언하기 위하여 전국 4개 상담소의 상담일지를 분석한 『성폭력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알려내는 포럼(<‘미투’가 말한 것, 말하지 못한 것>)과 학회지 게재(“성폭력 상담일지를 통해 본 2018년 한국 미투운동의 의미”)를 진행함으로써 미투운동과 역동하는 피해자들의 경험을 드러내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⁴⁾에 외화하였음

2) 2018년 8월 28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은 변호사 등의 업무광고 내용이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법률적 조력을 위한 것일 때에는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에 합치되는지, 피해자에 대한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는지에 대해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게재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8년 8월 29일자, 이데일리, ““성범죄 무죄로…피해자에 사과 마세요” 변호사광고 금지법안 나와”, 출처: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27446619312240&mediaCodeNo=257&OutLnkChk=Y> 등

3) 2018년 9월 15일, 한겨레신문, “성범죄를 저질렀다고요? 저희가 ‘구출’해드리겠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2196.html 등

- 현장기반 연구는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안내서(2014)」,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2017)」 발간과 같이 바뀌는 법과 새로운 현안에 대한 자료들을 만들고 전국 160여개 성폭력상담소와 관련 연구자들에게 활동/연구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반성폭력 언어를 개발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유의미한 자료들을 생산할 수 있음
- 상담소들에 축적된 자료는 외부인들에게 쉽게 공유되지 않음. 그러나 기관 내부 및 객원 연구활동가들은 상담일지, 내담자와의 면접 기록, 사건 지원 및 피해자와의 연대 활동들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경험에 기반한 연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강점이 있음. 이에 상담소의 자료를 기반으로 활동가들이 진행한 학위논문들이 진행된 바 있음⁵⁾
- 여성학은 실천학문으로써 실천이 이론으로, 이론이 실천으로 환류하면서 그 활동의 의미를 더할 수 있음. 여성주의 인식론을 기반으로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과 피해의 의미구성 과정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현장기반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주의적 실천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

4. 현장기반 연구의 한계와 과제

- 연구활동가 재/생산의 어려움 : 젠더폭력에 대해 연구하고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의 수가 많지 않고, 서로 만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음
- 현장기반 연구 진행의 어려움 : 현장기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동연구의 마인드가 없이 현장을 자료제공기관으로 생각할 때, 연구윤리, 연구저작물의 내용과 활용 등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여, 이에 대해 상담소 자료활용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음(별첨 자료 참고)
- 현장기반 연구자의 어려움 : 실제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나 이들의 생생한 기록들을 대면하는 것은 강점이면서도 때로는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사이에 해당 사건을 낯설게 볼 수 있는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하나, 거리감이 좁혀지기 어려운 경우들이 존재함. 연구자와 활동가의 경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함
- 기본적인 담론 분석 연구의 부족 :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변화나 제언의 지점들

4) 2019년 2월 15일, KBS 뉴스, “‘53년 전 기억까지 불러와’...‘미투’ 이후 상담일지 살펴보니”, 출처: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139737#kbsnews> 등

5) 이미경(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장다혜(2012), “성폭력 '형사합의'에 관한 페미니즘 법학적 경험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최란(2017), “‘이미지착취(Image Exploitation)’ 성폭력 실태와 판단기준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등

- 은 계속 도출되고 있고, 당면한 현안에 집중하다보면 기존 담론을 바꾸는 의미분석 과정을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있음. 성적자기결정권, 성적동의, 2차피해 등과 같이 밀도있는 분석이 필요한 작업들이 더 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시·정부 용역 연구의 한계 : 지자체나 정부 발주의 연구용역 등은 주로 원하는 연구의 내용과 방향이 일정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급진적이고 비판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음. 그러나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연구소에서 자체적인 큰 규모의 연구 진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5. 향후 과제

- 안정적인 연구비 마련의 필요
- 반성폭력 도서관의 필요 : 국내 반성폭력운동 관련 자료의 축적과 아카이빙을 위한 도서관이 필요함. 이를 통해 현재 국내에 비어 있는 연구와 자료가 무엇인지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이 참고하고, 선진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연구활동가 네트워크의 활성화 : 정기적인 포럼과 세미나, 공동연구 등을 통해 교류를 확장할 필요 있음. 이에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책을 짚고 나온 페미니스트’ 세미나를 제안함

[별첨]

(사)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자료 이용 등에 관한 내규(안)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사)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된 각종 비공개 자료의 연구목적 활용에 관한 원칙을 정함으로써 내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상담의 비밀보장은 물론 반성폭력 연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① (사)한국성폭력상담소는 열림터, 연구소 등의 부설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상담소라 한다.
- ② 연구소는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 ③ 자료는 상담소의 비공개 회의자료, 성폭력피해생존자 치유회복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상담자료, 상담일지, 상담통계, 조직운영 등과 관련된 자료 등을 말한다.
- ④ 자료 이용자는 자료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⑤ 내부 연구자는 상담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연구에 참여하는 이사상근활동가 연구원자문위원자원 활동가 등이며 외부 연구자는 내부 연구자가 아닌 자로서, 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연구소의 연구를 위하여 상담소 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외부 연구자로 보지 않는다.
- ⑥ 내담자는 상담소에서 상담 및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성폭력피해생존자 치유회복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자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 ① 자료는 (사)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름으로 된 연구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 단,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연구자에 의한 자료 이용은 허용할 수 있다.
- ②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할 경우에는 (사)한국성폭력상담소의 원칙인 「내담자에 대한 사적 비밀 보장」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 ③ 자료 이용자는 연구자로서의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연구물을 통해 반성폭력 운동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 (외부연구자의 자료이용 자격)

- ① 상담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외부 연구자의 자격은 전현 상근 및 자원 활동 경력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자로, 상담소의 심사를 거쳐 정한다. 이때, 현전 회원활동

만으로는 외부연구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 ② 기관인 경우는 기관의 성격, 연구 목적 등을 근거로 제5조에 따라 자료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 ③ 기타 자료이용을 통한 연구결과가 여성인권의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5조에 따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외부연구자의 자료이용 거부 결정) 상담소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외부 제안이 있을 때에는 상담소「상근자 회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한다. 단 상근자 회의에서 자체 논의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결정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외부연구자의 자료이용 원칙)

- ① 상담소 자료 열람 기간은 계약 시점부터 1년 이하로 한다. 단, 합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 ② 상담소 자료의 외부 연구자 열람 시 상담소 자료의 원본·사본·파일 등 일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자료 이용은 상담소 내의 담당자와 협의한 장소에서, 업무시간(평일, 9:00~18:00)에 한하며, 구체적인 방문 일시는 담당자와 협의한다.
- ③ 연구에 상담소 자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직접 인용여부를 막론하고 연구방법 설명, 각주 처리 등을 통해 상담소 자료임을 명시해야 한다.
- ④ 상담일지 인용시에는 직접 인용을 최소화한다. 단 부득이하게 원문 그대로 인용할 때에는 내담자의 신상정보, 기타 피해상황에 대한 기술로 인하여 내담자가 특정되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담자의 비밀 누설 금지의무에 상당하는 주의 의무를 진다.
- ⑤ 연구 결과물은 해당 기관 제출 전 상담소와 최종 협의를 해야 한다. 이 때 연구 결과물이 제3조와 제6조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상담소 자료 이용 계약은 무효가 된다.

제7조 (내담자 연계원칙과 절차) 외부 연구자가 연구목적으로 내담자와의 연계를 원할 때는 상담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연구결과물 발표의 원칙) 자료이용을 통한 상담소의 연구결과물은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담소와 협의를 거쳐 논문의 형태로 발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해당 논문이 상담소의 연구 결과물 또는 그 일부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계약) 이 내규에 따른 자료 이용 계약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자료 이용 계약서’ 양식을 따른다.

2013. 07. 12 제정

연구활동가 발표 세션1

그루밍 성폭력 사건 관련 미디어 담론 연구
_성공회대 실천여성학 12기 석사 김민주

가족주의를 통해 부정되는 성폭력: '가해자 아내' 발화의 효과를 중심으로
_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남승현

젠더 폭력의 (탈)피해자화: 국가와 페미니즘 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_버클리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박주현

그루밍 성폭력 사건 관련 미디어 담론 연구

성공회대 실천여성학 12기 석사 김민주

누가 성폭력을 말하고 판단하는가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성폭력 사건들이 미디어를 통해 ‘그루밍 성폭력’으로 담론화 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한다. 국내 법률상 아직까지 정의된 바 없는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의 취약한 피해자를 선택한 후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길들이고,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성폭력이다.

성폭력은 우연히 일어나는 폭력이 아니며 대부분 아는 사람¹⁾에 의해 자행되는 계획적인 폭력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사회의 성폭력 사건에 관한 사법적 판단기준은 전형적인 성폭력 통념, 즉 낯선 처한에 의해, 불현듯, 의도 없이, 욕망에 이끌려,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력을 통해 발생한다는 가해자-프레임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해자-프레임은 피해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강력한 저항을 보일 것이며, 바로 피해를 인지함으로써, 신고나 도움 요청은 필히 해야 하는, 피해자-프레임을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적 착취를 위한 가해 의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저항이 없는 피해자 행위를 성폭력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한 그루밍 성폭력은 기존의 성폭력 통념 안에서 법적으로 규율되지 않았던 가해자/피해자를 설명하는 새로운 언어의 창조이며 반성폭력운동의 실천 결과로써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루밍 성폭력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적 행위 없이도 그 가해 의도만으로 처벌 가능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취약한 피해자성으로 폭력을 가시화한 맥락이 오히려 그 취약한 피해자성 때문에 기존의 성폭력 통념, 피해자-되기 프레임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라는 의문이 있

1)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8년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029건(86.5%)으로 가장 많다. 피해 연령별은 성인의 경우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342건(37.9%)으로 성인피해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청소년은 학교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피해가 33건(24.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족에 의한 피해가 27건(20.2%)으로 뒤를 이었다. 어린이와 유아인 경우 친족에 의한 피해가 47건(56.6%), 13건(61.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2019).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URL:

http://www.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7&page=1&f_cate=&idx=4848&board_md=view

다.

지금, 새로운 유형의 폭력으로서 제기되는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 사건들이 사법적 판단 아래 미디어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사법기관과 미디어에서 구성하고 판단하는 진실이 피해자가 말하는 진실과 대치되는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사법기관과 미디어가 가치중립적이며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보도할 것이라는 당연시되는 전제는 피해자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위치를 선점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경험은 입증 책임과 함께 ‘객관성’이라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미디어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루밍 성폭력으로 명명되어 보도된 사건은 연예기획사 대표의 여중생 성폭력 사건이다. 연예기획사 대표(남, 42세)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여중생(여, 15세)에게 접근하여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임신한 여중생에게 간음을 목적으로 가출을 종용함으로써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1심 12년, 2심 9년의 유죄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은 접견 서신이나 문자 메시지의 횡수, 내용, 형식 등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로 선고하였다.

이에 맞서 여성단체들은 재판부의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성폭력에 대한 젠더 인식/젠더 감수성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판결은 한 사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했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 인식은 최근 ‘그루밍’이 언급된 강간·강제추행 관련 판결문 6건을 분석한 서울신문의 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법원은 그루밍 성폭력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특성이라 인식하여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 ‘그루밍’을 인정한 사례는 전무했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때에만 그루밍 성폭력을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도 연인 관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그루밍 성폭력으로 보지 않았다.²⁾

그루밍 성폭력의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쟁점을 발화한 것은 안희정 성폭력 사건이다. 수행 비서를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언행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재판부는 피해자 언행의 모순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피

2) 서울신문 기사에 의하면 조카를 10대 때부터 강간·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38)에 대해 법원은 ‘그루밍 상태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커플 앱을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이거나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학원생이 교수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뒤 무혐의 결론이 나오자 대학원생이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논문 지도교수 지위를 이용하는 등 그루밍 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나이·학력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2019.1.13). 그루밍 성폭력, 아동·청소년 피해자만 인정한다. <서울신문>. URL: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14011031>

해자가 그루밍이라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인지를 가늠하고 판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루밍 성폭력 피해 대상을 아동으로 한정함으로써 사회경험이 충분하고 성숙한 전문직 여성 비장애 여성 피해자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희정 사건 2심 재판부는 피해자답지 않은 피해자의 언행에 대하여 “성폭행의 피해자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정형화된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는 보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³⁾”이라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어서 대법원에서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함으로써 실형을 확정지었다.

법은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보편타당한 사회적 규범이며, 법의 해석이 객관적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할 것(양선숙, 2011: 87)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법체계를 단순히 강제성을 가진 사회규범이나 관습이라는 틀로만 이해하면 법은 딱딱해지고 경험칙이라는 보편성의 전제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경험을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으로 축소시킨다. 이에 법이 이성애에 따른 사회 규범적이며 객관적일 것이라는 신화는 현실과 괴리된 판결을 낳고 있으며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정당화시키고 있다(전해정, 2013: 187).

또한 미디어도 흔히 미디어가 세상을 보는 창이라 말하지만 미디어는 현실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드러내어 재현해낸 현실을 구성하여 보여준다. 따라서 미디어는 세상을 현실과 다르게 재현한다(정혜경, 2014: 6). 즉, 미디어는 현실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재현된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잣대와 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김훈순, 2004: 64).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일반 시민들은 성폭력 사건의 재판과정과 결과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 및 해석을 미디어를 통해 처음으로 접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미디어를 통한 재현은 현실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재현된 사회적 구성물이다. 이에 미디어에서 구성되는 성폭력 사건의 ‘진실’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중립적 객관성이라는 틀에 의해 선택되고 삭제되어 만들어지는 인위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미디어는 성폭력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이나 현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강조하거나 삭제하거나 배척함으로써 성폭력 진실은 이러이러할 것이라는 편견과 통념을 자리 잡게 한다. 또

3) 서울고등법원 2019.2.1 선고 2018노2354 판결, 판결문 40쪽.

한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통념은 사법기관의 판단과정에서 경험칙이라는 틀로서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루밍 성폭력 사건 관련 미디어 담론을 페미니스트 인식론⁴⁾의 ‘객관성’ 비판에 기반하여 ‘진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가 구성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신문기사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그루밍 성폭력 담론의 쟁점인 그루밍 과정을 통한 가해 의도와 취약한 피해자의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그루밍 성폭력 담론을 둘러싼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성폭력 통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루밍 성폭력 담론 형성과 쟁점

국내에서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로 여성단체들의 토론회나 학술지를 통해 새롭게 유형화된 폭력으로서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이해 연구(탁틴내일, 2017; 신현주, 2019; 채수지, 2018)가 대다수이다. 연구 내용은 그루밍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시키면서 법제화를 위해서 국내 형법체계와 외국 법제도를 비교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그루밍 성폭력을 처음으로 공론화 한 것은 탁틴내일 청소년성폭력상담소 주최로 진행된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토론회이다. 지금 한국사회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이해는 탁틴내일 토론회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은 그루밍 성폭력을 아동·청소년 성범죄 특성으로 전제하면서 법제화를 위한 논의에서도 성적 동의 연령의 상향조정에만 머물고 있다.

그러나 채수지(2018)는 한국여성신학회 학술포럼을 통해 교회 내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10대 미성년 여성들뿐만 아니라 성인 여성, 심지어 엘리트 여성들도 그루밍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배복주(2017)는 탁틴내일 토론회를 통해 지적 장애인 대상의 그루밍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면서 성적 동의 연령의 상향조정만으로는 피해를 구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과 피해 구제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그루밍 성폭력 특수성으로 설명하고

4) 페미니스트 인식론은 페미니즘을 연구함에 있어서 ‘객관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지배적인 인식론의 전제를 수용하면서 여성의 고유한 삶과 경험에 입각하여 객관성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그러한 객관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론적 틀을 모색하는 시도이다(최희경, 1992: 3). 이 연구는 페미니즘 연구로서 성폭력 사건 관련 객관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피해여성의 진술에 대한 객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기관과 수사기관, 미디어가 전제하는 ‘가치중립적 객관성’의 허구를 밝힘으로써 성폭력 사건의 ‘진실’이란 결국 누구의 경험을 객관적 경험으로 선택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를 선택하고 신뢰를 확립한 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비성적인 행동부터 시작해서 성적 접촉을 확대하기 때문에 “결국 아동이 성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고 마치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신현주, 2019: 131)고 보았다. 채수지(2018)는 그루밍 성폭력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서 규정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 특수성에 주목한다. 위계적 조직 구조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가부장적 종교 권력을 꼬집으면서 목회자의 성범죄를 간음이나 불륜으로 프레임화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임수희(2017)는 탁틴내일 토론회를 통해 아동을 상대로 한 성관계에 관한 형벌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만 13세 이하면 동의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허술한 법 규정은 가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 간음·추행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에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음을 문제시하고 있다. 박은정(2017)은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은 전문성을 갖춘 검사, 수사관, 재판부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고 현행 법률에서 처벌할 수 없는 범위의 그루밍 수반 성범죄에 대하여 신중 형사 범죄로 입법화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사회에서 그루밍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에 비하면 기존의 연구 자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성인도 그루밍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지만 주요 대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의 특성으로 대부분 전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그루밍 성폭력 피해의 주요 대상으로 성인은 물론 지적장애여성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루밍 성폭력이 법적 규제와 처벌에 대해서 현행 법규 안에서 규율되는 것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루밍 성폭력의 쟁점인 가해 의도와 피해자 취약성이 어떻게 범죄성을 입증하는 사실적인 근거로서 객관에 이를 수 있는지는 다루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그루밍 성폭력이 아동·청소년에게만 국한되는 성폭력인가라는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그루밍 성폭력 사건 관련하여 미디어에서 구성해내는 ‘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루밍 성폭력 사건 관련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을 살펴보고 그루밍 성폭력 범죄성을 둘러싼 논쟁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친밀한 관계 성폭력의 딜레마

친밀한 관계 성폭력이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다. 친밀감이란 자신의 무엇을 상실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자신 외의 누군가와 개방적인

관계를 맺는 능력으로(Stone, 1973; 권민혁·김은하·신희천, 2017: 64 재인용), 친밀감 형성 과정은 자신의 주관적이고 내적인 경험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박혜련·손은정, 2012: 1085).

위의 친밀감에 대한 정의로 친밀한 관계를 정의해보면 인간관계 형성함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공개가 일어나는 유형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친밀한 관계로는 부모, 형제, 자매, 연인, 동료, 친구 등이 있다. 이에 친밀한 관계 성폭력을 구분해보면 친족성폭력, 데이트 폭력, 직장 내 성희롱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루밍 성폭력을 친밀한 관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친밀한 관계 성폭력으로 범주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루밍 성폭력이 그루밍 과정을 통해 친밀함을 가장하고 위계와 위력에 의한 성적 착취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사회에서 친족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된 사건은 1991년 의붓아버지에게 12년간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김보은 사건이다.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남자친구가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으로서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암수율이 높은 친족성폭력은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친족성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이러한 통계 결과는 성폭력범죄 처벌 관련 법률의 개정⁶⁾으로 인하여 강간죄의 성범죄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점과 친족성폭력 대상의 확대와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의 확대가 시행됨으로서 은폐되었던 다양한 성폭력이 드러나고 피해자들의 발화가 시작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친족성폭력 중에서도 오빠성폭력이라는 피해 경험이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그대로 드러내어 기사화되기 시작되었다. 일반 성폭력과는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다. 최근 5년간 친족 간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 접수된 친족 간 성범죄는 총 3659건에 달했다. 2014년 624건이었던 친족 간 성범죄 접수 건수는 2015년 676건, 2016년 725건, 2017년 776건, 지난해 85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2.4건이 접수됐다. 친족 간 성범죄 가해자 중 약 70%는 동거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혜(2019.09.17). "친족 간 성범죄 매년 증가...가해자 70%는 동거인". <중앙일보>. URL: <https://news.joins.com/article/23579312>

6) 2013년 6월 19일부터 형법, 성폭력특별법, 아동법 등 성폭력범죄 처벌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되었다. 형법에 강간죄에 대해서 성범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으며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었다. 친족성폭력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에서 '8촌 이내의 혈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이 확대되었다.

달리 오빠성폭력은 피해 사실을 안 부모 손에 이끌려 신고되지 않는다⁷⁾. 가족 붕괴라는 두려움은 온 가족이 합심하여 피해자의 진실을 묻기 바쁘다. 그래서 오빠성폭력은 가정폭력을 동반한다.

한국사회 유교적 가부장 문화는 가족제도 안에서 남성 우위를 바탕으로 남녀 차별적 규범과 남성 중심적 가치관을 형성해왔다.

가부장제도는 가족제도의 남성 연장자 1인에게 가족을 통제할 권력을 정치·경제적, 문화·사회적으로 제도를 통해 부여한다. 이에 여성을 통제하고 지배하며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면서 소유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이러한 유교적 가부장 문화가 가족 안에서 아버지에 이어 아들에게 그대로 전승되면서 오빠성폭력은 가족 안의 젠더 권력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관계 안에서 사랑과 폭력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점을 드러내는 용어이다.

배수희(2015)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다수의 선행 연구가 개인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은 개인의 특성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해석되고 있어서 결국 높은 수치로 보고되는 데이트 폭력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봉쇄되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지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고 말한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관계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⁸⁾ 감금과 협박, 그리고 성폭력과 살인까지 이어지는 데이트 폭력의 민낯은 폭력으로 점철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이라는 낭만화에, 우발적인 범행일 것이라는 관대한 시선과 사랑하는 사이에 벌어진 불행한 사건 정도로 무마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성희롱⁹⁾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논란의 여지가 가장 많은 사건¹⁰⁾이다. 한국사회에서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사건은 ‘서

7) 전정윤(2019.07.29). 40년 만에 털어놓는 #오빠_성폭력_미투“. <한겨레>.

URL: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03715.html>

8)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만3325명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9521명, 하루 평균 26명이 검거됐음을 의미한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로 검거된 인원이 2만4405명으로 전체 3만3325명의 73.2%를 차지했으며, 경범죄 등 기타 13.5%, 감금·협박 11.3%, 성폭력 1.5%, 살인(미수포함) 0.5% 순이었다. 한갑수(2019.10.15). 데이트 폭력 하루 평균 26명 경찰 검거. <파이낸셜뉴스>. URL: <http://www.fnnews.com/news/201910151558593310>

9) 성희롱에 대한 법률화 논의는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성희롱’이 법률적 용어로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1999년 7월 시행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1999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였다. 이로써 국내에서 성희롱을 사회적으로 명명하고 법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한다.

10)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신고가 21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그 중 19건(8.9%)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처리 중인 4건을 제외한 190건(89.2%)은 ‘법 위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올대 신교수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고용주이자 책임용 여부를 쥐고 있는 가해자 신교수가 조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6년간의 법정 싸움은 결국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사건을 노동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성희롱 정도로만 판결한 시대적 한계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권력관계가 명백한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직접적 고용관계에 있는 상하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김예지, 2015: 91). 그러나 기존의 사회적 통념은 여성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농담 등은 직장 내에서 동료들 간의 친밀성을 표현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이에 만연한 성희롱 조직 문화로 인해서 오히려 감수성이 높은 피해자가 조직 부적응자로 회화된다. 또한 피해자를 공동체 내부고발자로 인식함으로써 2차 가해가 만연한 폭력이다.

이상으로 친밀한 관계 성폭력으로 친족성폭력, 데이트폭력, 직장 내 성희롱 등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친밀한 관계 성폭력이 치명적인 것은 폭력의 지속성이다. 폭력과 협박, 저항 없이도 성폭력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친밀함'과 '위계'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친밀함'이란 위에 정의된 개념에 더하여 피해자의 의지만으로는 단절할 수 없는 관계임을 추가로 정의하고자 한다. '위계'란 성별, 연령, 직위, 직급 등 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 등에 의한 권력의 차이를 말한다.

위와 같은 전제로 친밀한 관계 성폭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족성폭력을 금기시하는 문화는 '가족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근간으로 한 것이다. 이에 보호자에 의한 가족 구성원 살해사건을 역사상 유례없는 '가족 동반 자살'로 인정하는 한국사회에서 가족이 하나라는 담론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권력 관계를 은폐시키고 위계를 당연시하면서 살해라는 범죄를 삭제시킨다.

이제까지 친족성폭력 사건을 근절한다는 것은 가해자의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정상적인 남성성을 회복하여 다시금 가부장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었다. 이에 성폭력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친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데이트 폭력 또한 폭력으로 점철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당연한 권리를 '변심', '배신' 등 가해자 폭력의 원인으로 규명함으로써 폭력이라는 사회 문제는 연인 간의 치정 문제로 둔갑시킨다.

직장 내 성희롱의 원인은 국가, 가족 그리고 직장으로 이어지는 가부장 사회

조혜승(2019.10.04). 직장 내 성희롱 늘지만 8.9%만 기소 송치. <여성신문>. URL: womennews.co.kr

질서를 그대로 답습하는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맞물려 있다. 이에 직장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노동자라는 단일한 역할이 주어지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성역할에 따른 규범 수행과 노동자라는 이중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래서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예외범절이라는 관습으로, 선량한 풍속으로 치환시키고 경계를 무디게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이 낮은 치환에 의해 발생한다는 잘못된 통념은 친밀한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은폐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이미정·변화순·김은정, 2009: 5). 또한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 관련 유일한 목격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여러 논쟁을 수반해왔다(허민숙, 2016: 5). 더불어 현행 형법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협박, 피해자의 저항을 명시하고 있어서 폭행과 협박, 저항이 없는 친밀한 관계 성폭력 사건들을 법적으로 처벌함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미디어와 담론: 가치중립적 객관성의 허구

미디어는 ‘사실주의’, ‘객관주의’를 바탕으로 보도의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김효영, 2019: 10).

그러나 미디어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여 현실을 사회적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미디어가 사실에 근거한 객관주의를 표상하고 있는 것은 인식론적 문제를 안고 있다. 구성주의의 시각은 객관적 현실은 없거나, 있어도 객관적 표상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말하는 객관성이란 형식적 객관주의로 실천됨을 알 수 있다(남재일, 2004: 3).

미디어의 형식적 객관주의는 기자 혹은 관찰자 개개인의 관점과 취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절대적인 기준과 지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김상호, 2007: 6). 따라서 미디어의 형식적 객관주의는 객관적인 진실이 존재하고, 기자 혹은 관찰자 개개인이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 역할에 위치하여 사실과 의견을 분리함으로써 견해를 배제하고 사실을 전달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담론 또한 일반적으로 개인과 구조, 행위자와 제도, 이데올로기와 매개자 등이 복잡다단하게 얽힌 층위에서 사회적 사건과 실재를 형성하는 ‘구성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담론은 우리가 사물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사물을 파악하고 해독하는 방식을 구조화하며, 발화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인지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제시하는 것으로 사회와 세계에 대한 해석의 틀과 체계를 제공한다(이기형, 2006: 144).

김효영(2019)은 담론이란 특정한 인식이나 주장을 담고 있는 이야기나 텍스트 혹은 발화의 집합체로서 담론은 언어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것으로 정의되어

야 하며 따라서 담론을 분석할 때, 우리는 텍스트 자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그 담론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 간의 권력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담론이라는 텍스트를 분석한다는 것은 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배제되고 있는가에 권력관계를 파악하여 그 전지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디어가 추구하는 객관성이란 가치중립적 관찰자라는 언론인에 의해 달성된다고 전제하는 형식적 객관성이고, 담론이란 다양한 주체들 간의 언설들이며 지배적인 담론이란 언설들의 경합 안에서 결국 권력관계에 의해 지배 집단의 이해가 승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성폭력은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경험하는 학대, 강제, 완력의 모든 형태를 포괄하는 용어(Kelly, 1987: 59; 최란, 2017: 2 재인용)로,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에서 반성폭력운동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성적 피해(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명명하면서 시작되었다(변혜정, 2004: 43).

한편, 한국사회 성폭력 사건의 ‘객관성’이란 남성의 경험에 입각해서 피해여성의 진술을 심문함으로써 구성된다. 즉 가해자의 진술이 아닌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 ‘일관성’, ‘신빙성’을 심문하는 방식으로 ‘사실’이 구성되고 있다. 유독 성폭력 사건에만 ‘증거·증언의 부재와 진술 배치’가 부각되어왔던 이유를 무엇을 ‘증거’로 인정하는가, 어떤 내용과 어떤 요건을 갖춘 진술을 ‘신빙성 있는 진술’로 받아들이는가 자체가 성별화되어있다고 전희경은 주장한다(전희경, 2003: 74).

이에 친밀한 관계 성폭력을 검토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폭력의 기호들과 맞물린 성폭력 사건과 달리 성폭력이 친구, 우정, 연애, 사랑과 같은 친밀성의 기호들에 둘러싸인 섹슈얼리티로부터 어떻게 폭력이 발생하며 그 폭력을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신상숙, 2001: 10).

가부장적인 남성중심문화가 보편으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엇을 문제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는 성관계인지 성폭력인지, 강간인지 화간인지,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내세우는 무수하고도 자명한 경계들에 대해서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는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근거로 삼아 성폭력 사건 관련 페미니스트 미디어 담론을 연구한다는 것은 미디어의 담론 재현 방식과 행태로 인해 젠더화된 섹슈얼리티 통념이 어떻게 재생산되는지를 밝혀내는 작업이다. 그래서 기존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들을 해체하고 새로운 페미니스트적 대항담론을 구성하려는 실천 작업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페미니스트 연구에서 다른 ‘객관성’ 논의를 통해

미디어 담론의 권력 생산에 대해 살펴본다.

페미니스트 과학연구자들은 근대과학이 남성적인 그리고 서구적이고 부르주아적인 필요와 욕망에 의해 불가분 연결되어 태동했다고 보며 지식주체로서의 과학자/연구 대상, 객관성/주관성, 이성/감성, 정신/육체라는 이분법 상에서 전자는 남성성과 후자는 여성성과 연결되어 왔다고 말한다(황희숙, 2012: 8). 이에 과학, 기술, 지식론에 대한 페미니즘 내부의 주요 경향은 여성, 남성, 젠더관계, 과학이 어떻게 기능했고, 기능하며, 기능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과학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와 자연세계 전반도 포함하는, 경험적으로 더 적절하면서 이론적으로 덜 편파적이고 덜 왜곡된 묘사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Harding, 1991: 31).

이처럼 페미니스트 인식론은 과학적 진실의 형성에 젠더 권력이 개입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지식체계에서 성차별적 이념들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전통적인 학문에서의 개념 체계의 객관성, 합리성은 불충분하다고 보며, 남성 중심적인 가설과 신념으로 인해 여성의 삶의 왜곡되어 나타난다고 지적한다(김효영, 2019: 18).

여성주의 입장론을 대표하는 여성주의 철학자 샌드라 하딩(Sandra Harding, 1991/2009)은 페미니스트 연구의 객관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인식론적 전략으로서 페미니스트 경험론과 페미니스트 입장론,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 세 모델은 각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라 페미니스트 입장론은 페미니스트 경험론에 대한 반론으로,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은 페미니스트 경험론과 페미니스트 입장론의 반론으로 등장하였다.

페미니스트 경험론과 페미니스트 입장론은 크게 보면 기존의 과학과 마찬가지로 지식과 학문의 객관성, 과학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Harding, 1987: 187; 최희경, 1992: 31 재인용)한 토대 위에 이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반해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은 종래의 지식과 학문의 권력체계와 이를 지지해 온 객관성, 이성 등의 남성중심성을 비판하면서 이를 거부한다. 이들은 현실에 대한 하나의 보편적인 지식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며 다만 수많은 주관적 경험만이 존재한다고 본다(최희경, 1992: 32).

우선, 페미니스트 경험론은 기존의 실증주의적 과학의 인식론적 전제를 수용한다. 이에 전통적인 실증주의적 규범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페미니스트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주로 과학적 방법의 실행의 불완전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과학 규범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Harding, 1991/2009: 178). 이에 남성주의적, 성차별주의적 연구 결과는 연구자의 사회적 편견과 왜곡이 연구 과정에서 개입한 결과로 생긴 것이다. 페미니스트 경험론의

객관적인 연구 실현에서 객관성이란 외부의 실재를 최대한 정확하게 묘사하고 설명한다는 의미의 실증주의적 객관성이다(최희경, 1992: 35)

페미니스트 경험론은 지식의 원천으로서 관념보다는 경험을 중시한다. 따라서 합리주의와는 대조를 이룬다. 또한 ‘나쁜 과학’을 문제시하는 것이지 과학의 성차별적이고 남성중심적 객관성을 문제삼지 않는다.

이에 샌드라 하딩은 자연과 사회세계가 어떻게 조직되는지를 알아내는데 경험 연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연구해야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정당화해야 하는지에 관한 하나의 이론으로서 페미니스트 경험론을 비판하고 있다(Harding, 1991/2009: 188)

페미니스트 입장론은 페미니스트 경험론이 과학적 방법의 실행의 불완전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페미니스트 입장론은 과학적 규범 그 자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다. 즉 실증주의적 객관성 개념 자체가 성차별적 기준에 의해 구성된 것을 문제시하는 것이다. 모든 진리란 근본적으로 존재를 통해 매개되는 것으로 지식 또한 사회적 상황 속에 놓여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지식은 늘 역사상 특정 순간의 사회정치적 형성과정에서의 개인의 위치와 관련하여 매개된다. 그러므로 억압자/집단의 진리와 피억압자/집단의 진리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조주현, 2006: 151).

페미니스트 입장론은 여성들의 차별화된 삶을 과학적 연구의 출발점으로 본다. 성별 위계화된 사회 속에 있는 여성들의 입장이나 상황을 연구 자원으로 활용한다. 다시 말하면 젠더 차이, 즉 남성과 여성이 처한 상황의 차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들에게 과학적인 이점을 주는 그런 차이에 초점을 맞춘다(Harding, 1991/2009: 178).

마지막으로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은 하나의 진실이라는 지식은 없으며 지배적인 지식의 부분성으로 단일한 지식을 부정한다. 헤러웨이는 “상황적 지식들” 개념을 통해 지식의 보편성을 부정하며 지식의 부분적 특성을 강조한다. 상황의 개념은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몸을 가진 주체를 제안하고 지식들의 개념은 지식의 복수성을 인정하면서 위치성의 구성적이고 불확정적 특성을 강조한다(정연보, 2013: 69).

위와 같은 인식의 전제로 본 연구가 지향하고자 하는 미디어 담론에 대한 페미니스트 연구란 페미니스트 경험론과 페미니스트 입장론 관점에 기반해 미디어가 생산하는 재현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성폭력 사건 관련 객관성을 입증을 둘러싼 논쟁에 있어 본 연구의 입장과 개입 지점은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경험과 입장이 보편적 객관성으로 간주되는 권력의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에 있다.

대항적 성폭력 담론을 위하여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성폭력 사건들이 미디어를 통해 그루밍 성폭력으로 담론화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한국사회에서 그루밍 성폭력 담론과 그루밍 성폭력 사건 관련 ‘진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가 구성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그루밍 성폭력 담론을 둘러싼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성폭력 통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과정을 통해 밝혀진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 그루밍 성폭력 개념의 등장은 2007년이고 이후 성폭력 사건들의 지형을 드러내는 계기가 마련된 미투운동의 물결에 힘입어 여성들의 다양한 성폭력 경험들이 발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루밍 성폭력 담론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다.

둘째, 가해자 담론은 그루밍 과정을 통해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한국사회 일상적이고 놀이문화로서 만연한 강간문화는 가부장사회에서 성폭력이라는 사회문제를 성욕 해소의 관점으로 해석하도록 했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는 남성 중심적 성적자기결정권 해석의 근간을 이루고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고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는 성매매 담론과 일치된다.

가부장적이고 유교적 성문화를 가진 한국사회에서 가해자들이 그루밍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위계적으로 성별화된 구조를 토대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연인 관계라는 틀로써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킴으로서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그루밍 성폭력 가해자는 사회적 규범을 어긴 일탈자로만 규정됐다. 즉, 개인의 일탈일 뿐이며 특수한 존재의 개인으로서 대다수의 남성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소수자의 일원으로 정의되었다. 결국, 타자화되고 경계 지어진 특수한 가해자 개인만을 강조하는 재현방식은 성폭력이라는 사회문제를 사회 구성원의 의식과 태도 변화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차단됐다. 이에 여성들로 하여금 무력감과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오히려 남성에게 의존성을 높이는 효과를 생산했다.

넷째, 기존의 성폭력 담론과 그루밍 성폭력 담론의 차이점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그루밍이라는 범죄 행위이다. 그러나 기존의 성폭력 담론 안에서 성폭력을 입증한다는 것은 실증주의적이고 객관적인 물증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그루밍이라는 가해의도를 재현함에 있어서 그루밍이라는 비가시적이고 비물화된 범죄성은 배제되고 삭제되었다. 그루밍을 전형적인 성폭력 수법으로서 그루밍이라는 가해의도 정도뿐만 아니라 협소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루밍이라는 가해의도의 범죄성은 희석되고 성폭력의 미수 사건 정도로 처리되었다.

반면에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 담론은 취약한 피해자, 즉 약자로서 피해자를 강조하고 피해를 선정적으로 피해를 기사화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첫째, 미디어는 기존의 성폭력 통념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를 재현함에 있어서 범행내용과 피해상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에서 보도의 선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둘째,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문제를 사회문제로 공론화하기 위한 전략은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성폭력 범죄의 치명성을 강조했었다. 성폭력이 잔혹하고 치명적인 폭력이라는 점의 강조는 곧 성폭력 피해자의 삶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해자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인식과 등치되었다. 그래서 성폭력의 피해가 치명적일 것이라는 굳어진 통념은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오히려 피해자가 의심받는 상황으로 역전되고 있었다.

셋째, 그루밍 성폭력의 취약한 피해자성은 폭력과 협박이 없고 저항조차 없는 성폭력 피해자를 기사화하는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다 포착되어 설명될 수 없으며, 이에 취약한 피해자로 설명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폭력 사건을 보호하지 못하고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처벌의 공백은 바로 피해 사실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넷째, 한국사회는 성폭력 문제는 성폭력과 성매매 경계 사이에서 논의되었다. 이에 아직까지도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관점은 자발과 비자발의 이분법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한국사회는 성매매가 불법인 상황에서 어리고 미숙한 청소년이라는 전제에 당연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유독 성적 동의 연령에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로운 개인으로 격상되는 현실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 여성들은 스스로 피해자성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피해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그루밍 성폭력 담론 속에서 취약한 피해자성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기존의 성폭력 담론 즉, 여성을 대상화하고 피해자화하는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로서 위치시키는 한계를 갖는다.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피해를 입증함에 있어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제된 취약한 피해자성이 오히려 성폭력의 특수하다는 성폭력 통념을 재생산하고 공고히 하므로써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그루밍 성폭력 담론을 둘러싼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루밍 성폭력 범죄는 가해 의도를 목적으로 그루밍 행위라는 과정의 특성을 가진다. 현행법상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피해 당시 연령에 상관없이 아무런 유형력 없이는 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목도하였고 성인 및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처벌의 공

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취약한 피해자는 미디어를 통해 전형적인 형태로 보도되었다. 성폭력 사건이 가해자의 위법성을 논한다면 가해자와는 달리 피해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상황은 미디어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가해자가 누구인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가 얼마나 극심한지에 초점이 맞춰진 보도행태와 맞물려 있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진짜 성폭력’과 ‘진짜 피해자’를 변별하는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성폭력의 원인을 가해자에게 두지 않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근거하는 취약한 피해자라는 규명은 그저 가해자를 일탈자로서 처벌하는 것에 그치게 되고 성폭력의 손쉬운 표적이 되기 때문에 악순환의 연속일 뿐이다.

셋째, 한국사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한 논의는 가해자인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나이’에만 맞춰져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한 연령의 상향조정은 성매매 담론과 함께 아직도 경합하고 투쟁하는 담론으로, 자발과 비자발이라는 이분법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성폭력이 남녀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 성규범과 성차별적 성역할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할 때 성폭력은 무엇을 문제로 볼 것인가라는 인식론의 문제가 제기된다. 더불어 의제강간이 연령에 관한 논의에서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은 결국 한국사회가 무엇을 문제로 삼고 있는지에 대한 이른바, 문제화를 둘러싼 문제이며, 누구의 욕망을 전제로 하는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협소하게 해석됨으로서 그루밍 성폭력의 범죄성을 입증할 길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의 행사조차 하지 못했거나/못하는 취약한 피해자성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루밍 성폭력의 취약한 피해자성은 폭력과 협박이 없고 저항조차 없는 성폭력 피해자를 포섭하는 개념으로 의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이라는 다양한 여성들의 경험을 다 설명될 수 없으며, 이에 취약한 피해자로 설명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폭력 사건을 보호하지 못하고 처벌의 공백이 발생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성폭력은 인식론으로서, 성폭력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담론의 투쟁이며,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이 해석될 수 있는 피해자의 언어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미디어가 추구하고 실천하고자, 규범으로서 전제하는 가치중립적 객관성이란 가부장적 남성중심문화가 보편으로 간주되는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의 ‘진실’이 남성의 입장과 경험을 보편의 범주에 선점되고 여성을 보호받아야할 대상으로서 특수의 범주에 위치시킴으로서 성폭력 사건에 있어

서 객관성이란 자체가 성별화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더불어 미디어가 추구하고자하는 가치중립적 객관성이란 ‘진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초점에 맞추어 실질적인 증거를 통한 검증을 토대로 사실을 밝히고자 하기 때문에 비가시화되고 비물질적인 다양한 여성의 입장과 경험이라는 상황과 맥락을 배제시키고 삭제시키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하여 미디어의 가치중립적 객관성은 오히려 그루밍 성폭력 담론의 논의 지형에서 가해자/피해자의 권력 차이를 비가시화하고 성폭력 통념들을 재생산하는 등 형식적 객관주의에 그쳤으며, 미디어가 그루밍 성폭력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특정한 방식으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가해/피해의 재현 방식은 일반 수용자로 하여금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를 정상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반성폭력운동은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써 개인의 성적인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가부장적인 남성중심문화가 보편으로 간주되는 한국사회에서 성적 착취를 위한 가해 의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저항이 없는 피해자 행위를 성폭력이라는 개념으로 가시화한 그루밍 성폭력은 기존의 성폭력 통념 안에서 법적으로 규율되지 않았던 가해자/피해자를 설명하는 새로운 언어의 창조이며 반성폭력운동의 실천 결과로써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가장 큰 문제의식은 성폭력 법의 부재가 아니라 강간과 합의된 성관계를 구분하는 형법상의 기준이 여성의 입장과 여성의 피해 경험과 고통을 배제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강간법 안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이해받고 해석되는 적용받을 힘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다. 결과적으로 성폭력이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써 개인의 성적인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성폭력은 ‘저항’이 아닌 ‘동의’에 있으며 여성의 경험을 여성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는 한국사회에서 그루밍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는 시점에서 그루밍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고 재구성되는 그루밍 성폭력을 전반적인 담론을 분석하고 그루밍 성폭력을 둘러싼 쟁점들을 검토한 것은 앞으로 그루밍 성폭력 법제화를 위한 수많은 논의 중의 하나로서 의미 있는 시도일 수 있다.

다만,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과 한국사회에서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담론이 최근에 형성되고 있기에 사건의 축적이 많지 않고,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학계 및 법조계에서 공론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참 고 문 헌

- 권민혁·김은하·신희천(2017). 「한국판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구성요소 척도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8(6): 63-80.
- 김상호(2007).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분석적 고찰: 해석 공동체의 해석틀로서의 객관성 개념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7(3): 5-38.
- 김예지(2015). 「인권감수성을 지닌 판결을 통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5(2): 89-120.
- 김효영(2019). 『미투 운동에서 ‘객관적 진실’의 딜레마: 안희정 사건 관련 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훈순(2004). 「한국 언론의 젠더 프레임: 범죄뉴스와 여성」. 『한국언론정보학보』. 27: 63-91.
- 남재일(2004). 「한국 신문의 객관주의 아비투스: 형식적 사실주의의 전략적 의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박혜련·손은정(201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자기노출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3): 1083-1099.
- 배수희(2015). 「데이트 성폭력 실태와 담론분석」.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 57-69.
- 변혜정(2004). 「성폭력 피해 구성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 친밀한 이성애 관계에서 성(폭력)경험에 대한 여성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신상숙(2001).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사회』. 14(13): 6-43.
- 신현주(2019). 「아동·청소년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5(4): 124-142.
- 양선숙(2011). 『법철학의 기본원리』. 서울: 청목출판사.
- 이기형(2016).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사회』. 14(3): 106-145.
- 이미정·변화순·김은정(2009).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해정(2013). 「법 감정의 인식론적 가능성 연구」. 『법학논총』. 26(2): 185-209.
- 정연보(2013). 「상대주의를 넘어서는 상황적 지식들의 재구성을 위하여: 파편화된 부분성에서 연대의 부분성으로」. 『한국여성철학』. 19: 59-83.
- 정혜경(2014). 「아동성폭력 보도에서 드러난 언론의 섹슈얼리티모성계층의 편향성 연구: 고종석의 아동성폭력 신문보도에 대한 분석」. 석사학위논문. 성공

회대학교.

- 정희진·전희경·정춘숙·강김아리·김효선·박이은경·정미래(2003). 한국여성의전화 기획 정희진 엮음(2003). 『성폭력을 다시 쓴다-객관성. 여성 운동. 인권』. 한울아카데미.
- 조주현(2006). 「샌드라 하딩」. 『여성이론』. 14: 146-165.
- 채수지(2018). 「교회 내 그루밍 성범죄의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 모색-의식 변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신학회』. 한국여성신학회 주최 2018년 한국여성신학회 학술포럼 자료집(2018.12.08).
- 최란(2017). 「‘이미지착취(Image Exploitation)’ 성폭력 실태와 판단기준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 최희경(1992). 「페미니스트 인식론 연구-객관성 개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탁틴내일(2017).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 어떻게 볼 것인가?」. 탁틴내일 주최 토론회 자료집(2017.11.07).
- 허민숙(2016). 「성폭력 무고의 재해석」. 『한국여성학』. 32(2): 1-29.
- 황희숙(2012). 「페미니스트 과학론의 의의-하딩의 주장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8: 5-37.
- Harding, S.(1991). *Whose Science? Whose Knowledge?*. 조주연(윝김)(2009).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여성들의 삶에서 생각하기』. 나남.

가족주의를 통해 부정되는 성폭력: '가해자 아내' 발화의 효과를 중심으로¹⁾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남승현

1. 서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성폭력 사건 중 “안희정 성폭력 사건”과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 사회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그리고 사건 해석에 있어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어낸 것은 모두 ‘가해자의 아내’의 발화였다. 안희정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 안희정의 아내인 민주원의 증언은 유달리 주목을 받았으며, 2심 판결 이후에는 안희정 아내인 민주원씨가 SNS에 이 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가정을 파괴한 불륜 사건이라고 올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²⁾ 또한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덕제의 아내 역시, 인터넷 방송을 통해 남편의 결백을 주장하는 한편, 자신이 남편의 유죄판결로 인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³⁾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미투 운동 이후, ‘가해자의 아내’가 남편의 성폭력 사실을 부정하는 주요한 발화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아내의 발화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정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이슈화 자체가 가해자의 아내의 청와대 청원으로 시작되었다.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글⁴⁾은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다. 이 글에는 3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의 뜻을 표하며, 청원에 참여했으며, 2018년 10월 27일에는 위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법부 유죄 추정 규탄 시위’가 혜화역에서 열렸다.⁵⁾ 물론 위의 사건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이슈화가 될 수 있었던 것에는 당시 사건이 있었던 곰탕집의 CCTV가 유포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1) 이 발표문은 『여성학논집』 36집1호에 게재된 논문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폭력 가해자의 아내’ 발화의 효과”를 수정, 요약한 것입니다.

2) 조성진·최현빈, 『문화일보』, 2019.2.14.일자, “안희정 아내 “미투 아닌 불륜… 김지은, 가정파괴 가해자”.

3) 노우리, 『조선일보』, 2019.1.7.일자, “조덕제 아내 “직접 해봤더니 성추행 불가능” 주장 논란”.

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 (검색일:2018.10.06.)

5) 손정빈, 『뉴스시스』, 2018.10.6.일자, “오늘은 여성, 27일엔 남성…‘혜화역 시위’ 성 대결의 장으로”.

수 있겠으나, ‘가해자의 아내’라는 위치에서의 발화가 해당 사건이 이슈화되는데 미쳤을 영향도 부정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현재 성폭력이 이해되는 방식, 특히 성폭력 사건이 부정되는 방식과 관련하여 위의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아내’의 발화가 어떻게 위치 지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가해자 아내’의 발화가 유통되고, 이를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는 공간으로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 분석대상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A 커뮤니티의 게시물과 댓글들이다.⁶⁾ 여러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된 소위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집중하여 분석하기로 한 이유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유명인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파급효과는 작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진지 채 두 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 159건의 기사가 나온 것⁷⁾,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이하 ‘당당위’)>라는 온라인 카페 주최로 오프라인 집회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모두, 이 사건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사건은 ‘아내’의 발화를 통한 이슈화,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를 통해 유사한 방식의 발화의 등장⁸⁾ 등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남성-약자 서사가 구성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의 아내의 발화가 어떻게 의미화 되고,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분석하기에 적절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는 원래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자동차 관련 외에도 시사이슈, 유머, 자유게시판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 관련 사건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포괄한다. 시밀러웹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국내 접속 순위 50위에 해당하는 사이트로 대표적인 남초 커뮤니티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러한 남초 커뮤니티의 특성은 커뮤니티의 문화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회원 수의 성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OO아재’, ‘OO홍들’이라는 말이 서로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는 점, 레이

6) 이 사건의 가해자는 2019년 4월 26일,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단, 커뮤니티와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진 시기는 1심 판결 결과였다는 점에서 연구범위는 1심 판결 직후, ‘가해자의 아내’가 글을 올리고 그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가 이어졌던 2018년 12월까지의 게시물로 한정되었다.

7) 빅카인즈 뉴스검색을 이용하여 지난 3개월 간, 중앙지 7개와 경제지 7개에 실린 “곰탕집 성추행” 관련 기사를 검색하였다. <https://www.bigkinds.or.kr> (검색일:2018.10.29.)

8)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라는 온라인 카페에는 성추행/성폭행범으로 몰린 남편, 남자친구, 아들을 둔 여성들의 글이 ‘유죄추정 사례제보’라는 이름으로 올라오고 있다. <https://cafe.naver.com/mylifeforhappy> (검색일:2018.10.27.)

싱 모델 사진 게시판이 별도로 존재할 정도로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는 문화가 일상적으로 통용된다는 점에서 이 커뮤니티를 남초 커뮤니티로 정의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A커뮤니티에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언설들이 유통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남초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의미화 되고 있는지 드러낼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A 커뮤니티에는 ‘베스트글’ 게시판이 있어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자동 등록되거나 운영자가 선정하면 ‘베스트글’로 등록된다. 이에 연구자는 ‘베스트글’ 게시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게시물 상위 15개를 선별·분석하였다. ‘베스트글’ 게시판에 등록될 정도로 다수의 추천을 받았다는 것은 해당 게시물의 내용에 동의하는 회원수가 많으며, 해당 내용이 커뮤니티 내에서 공감을 얻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해당 커뮤니티의 경우, 게시물의 열람 및 검색은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기에 ‘베스트글’ 중에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조어를 활용하여 검색하였다.⁹⁾ 그렇게 검색된 게시물 중 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추려내었다. 그리고 각각의 게시물에 달린 댓글 역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댓글 하나 하나는 길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원 글과의 관계성 속에서 맥락화 되며, 원 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표 1] 분석 게시물의 제목과 추천수 (검색일: 2018. 12. 3.)¹⁰⁾

순 위	제목	추천수
1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6447
2	베스트부탁합니다. 저희형님께서 변호사인데 도움주신답니다.	4730
3	구속된 남편 와이프입니다.	4385
4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최고책임자의 호소문	2922
5	*수정* 곰탕집 화면분석 final(추가cctv포함)	2859
6	베스트글 실행6개월 판사	2853
7	OO사건 1차 시위 공지입니다	2634
8	남: 야 근데 저새끼가 진짜만졌어? (성추행 풀영상 후)	2569
9	[곰탕집 성추행 팩트] 변호사가 사임한 진짜 이유	2463
10	부인분 쪽지 왔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한글자 올립니다.	2439
11	<곰탕집 성추행사건> 후원통장 개설에 대한 아내분의 입장	2426

9) 이 사건과 관련한 게시물들을 선별하기 위한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곰탕집 성추행’, ‘곰탕집’, ‘아내’, ‘아내 성추행’, ‘성추행’ 등의 조어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10) 표 안에 OO 표기한 부분은 A커뮤니티의 이름의 약자, 혹은 풀네임이다. A커뮤니티 내에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커뮤니티의 이름을 따서 OO사건, 혹은 OOOO사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12	OO역을 남편 사건 분석해드립니다.	2418
13	★와이프님 판사이름 공개하셔두 됩니다★	2297
14	“억울하게 성범죄자 안되는 법” 카페 운영자입니다	2246
15	OOOO 사건으로 눈물을 흘리는 아내입니다 (피움)	2155

2. 여성 편향적인 국가와 사법폭력의 피해자인 ‘한국 남성’

이번 사건에 대한 A 커뮤니티의 반응은 대부분 해당 사건의 피고인 남성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이다.. 베스트 게시판의 상위 15개의 글은 모두 피고인 남성을 옹호, 지지하는 글들이다.¹¹⁾ 이 글들은 전반적으로 현재 한국남성과 국가의 관계가 남초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상상되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며, ‘가해자 아내’의 발화는 이러한 상상 속에서 그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A커뮤니티 회원들이 ‘한국남성’들과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 상상하고 있는지부터 분석하고자 한다.

남성-약자 서사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김수아(2017)의 논의에서 지적된 바 있다. 김수아(2017)는 ‘양성평등’을 위한 법이 존재한다는 점과 현실에서 ‘성평등’이 실현되는 것은 구별해서 사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약자 서사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한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와 법이 ‘성평등’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인지됨을 지적한다. 이는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성평등’은 이미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성차별’을 언급하며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것은 역차별을 조장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A커뮤니티의 댓글들에서는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찾기 어렵지 않다. 댓글들은 여성단체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국가 정책 및 운영이 여성 편향적으로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차별의 상황이 존재하며, 그리고 그러한 국가가 용인 혹은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은 ‘한국남성’이 한국사회에서 ‘약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주요한 메커니즘이 된다. 이번 사건 관련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은 ‘국가’에 의해 차별받고 있는 ‘한국남성’이 언제든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A 커뮤니티의 글, 특히 댓글들을 분석했을 때, CCTV 상으로는 팔이 여성의 엉덩이 쪽을 향하는 것은 보이지만, 신발장에 가려서 ‘엉덩이를 움켜쥐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데 여성의 ‘일관된 증언’만으로 징역 6개월 형을 내린 판결에 대한

11) 물론, 극소수의 댓글들에서 이러한 커뮤니티의 분위기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글들은 주로 ‘워마드’, ‘메갈리안’으로 몰려서 공격을 받고, 댓글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피고인의 억울한 상황에 공감하고,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가진 글들만 남는다.

반발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피해 여성은 처음에 지구대에 신고하러 갈 때에는 오히려 해당 식당에 CCTV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정민경, 2018). 그러나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발장이 시야를 가려서, 남자가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것이 ‘팩트’라며 피해여성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다.¹²⁾ 이에 해당 판결은 ‘명확한 물증’없이 여성의 증언만으로 남성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의미화 되었다.

“... 가해자 편드는게 아니고 이 판결이 맞다면 대한민국 모든 남자에게 일어날 수 있기에 두렵고 불안해집니다. 증언만으로 죄가 성립되고 엉덩이를 움켜쥐는 파렴치한 성범죄자 안되려면 움켜쥐지 못하게 양손에 깍스를 하고 다녀야 하겠습니까.”¹³⁾

“...CCTV로도 확인할수 없는 상황인데, 피해자라고 우기는 사람의 한결같은 주장 하나로... 6개월 실형이라... 걱정된다. 앞으로 양팔을 하늘을 향해 들고, 걸 어다녀야 하나? 누군가가, 저 남자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을 일관되게 주장하면... 목격자도 없고, CCTV로도 확인할수 없는데... 한결같이 주장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죄없이 성범죄자가 될수도 있다는 팩트에... 두려움을 느낀다.”¹⁴⁾

따라서, 순간적으로 엉덩이 방향으로 손을 뻗는 것까지 기록된 CCTV의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엉덩이를 움켜쥐는 정확한 장면은 CCTV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여성의 ‘일관된 증언’으로 인해 모든 남성들은 성범죄의 누명을 쓸 수도 있다는 것만이 “팩트”가 된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이에 대한 불만이 판사, 더 나아가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만난다는 점이다. 해당 사건의 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욕설과 회화화로 시작된 비난은 경찰의 수사 및 검찰의 기소, 사법부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표현된다. 경찰들은 실적을 위해, 검찰은 기소율과 승소율을 위해 기소되지 않을 만한 사건을 기소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사건의

12) 대부분의 댓글에서는 피해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일부 댓글에서는 피해여성성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피해 여성과 가해자의 진술은 모두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를 거쳤으며, 그 결과 가해자의 진술에만 거짓말 탐지기가 반응했다고 한다. 정작,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가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가해자 측 변호사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한다(정민경, 2018).

13) S****(2018),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최고책임자의 호소문” 게시글의 댓글, A 커뮤니티, 2018.09.08. <https://bit.ly/2N3FhNu>

14) 내****(2018),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최고책임자의 호소문” 게시글의 댓글, A 커뮤니티, 2018.09.09. <https://bit.ly/2N3FhNu>

가해자는 ‘사법폭력’의 피해자로, 더 확대되어 국가폭력의 피해자로 위치지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이 사건의 서사가 한국남성 일반으로 확장되어 불안함과 두려움과 같은 특정한 감정을 이끌어내고 있음이 분석될 필요가 있다. 사카이 나오키는 특정한 개인의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확인되어야 하며, 그것은 구체적인 대상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더라도, 영화와 같은 특정한 서사를 통한 ‘공상적’ 접촉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상적’ 접촉이 특정한 공동체, 범주를 구축함을 분석하였다 (Sakai, 2010). 이러한 사카이의 분석은 A 커뮤니티에서 오늘날의 ‘한국 남성’이라는 범주가 구축되는 것에 통찰을 준다. A 커뮤니티 회원들은 ‘의도치 않게 여성의 엉덩이를 스쳤다’가, 여성의 증언만을 근거로 6개월의 형을 살게 된 성실한 한국 가정의 위치에 스스로를 이입한다. 여기서의 ‘한국 남성’의 주된 관계성은 사법부와 ‘한국 남성’의 구도로 이루어져있다. 즉, ‘한국 남성’ 자체가 사법부에 의해 ‘사법폭력’을 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며, 해당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일종의 ‘공상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동했다.¹⁵⁾

이번 사건이 ‘공상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서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건의 ‘가해자’가 ‘평범한 한국 중년 남성’으로 이해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의 장에서 논의하겠지만, 이 사건의 ‘가해자’는 자영업을 하는 성실한 가장으로서, 시민단체의 회식자리에 실무자로 참여했다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가해자의 ‘위치’가 서술되는 과정에서 소위 ‘평범’한 가장임이 강조됨으로써, 그의 위치는 커뮤니티 회원들과 동일시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한다.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라는 ‘한국 남성’의 집단적 정체성에서 현재의 상황은 민주화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하는 문제로 서술되기도 한다. 아래의 댓글은 이번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6월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여겨지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비유하면서, 사법의 민주화를 주장한다.¹⁶⁾

15) 댓글들에서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 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2006)와 유사한 서사로 이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실제 성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한 서사로 간주되는 위의 일본 영화 역시도 일종의 ‘공상적’ 접촉을 위한 서사를 제공했다고 생각된다.

16) 이와 같은 유비는 2017년 말에 개봉한 영화 <1987>의 영향일 수도 있으나, A 커뮤니티의 세대적 특성 과도 맞물린다고 볼 수 있다. A 커뮤니티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처음에는 중고차 거래를 위한 사이트였다. 이러한 커뮤니티의 성향은 자동차 거래를 할 수 있을 연령대를 생각해보았을 때, 이 커뮤니티 회원들의 상당수가 중장년에 걸쳐있을 것을 짐작케 한다. 실제로도 A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스스로를 ‘OO아재’(OO은 A 커뮤니티명의 줄임말)’라는 ‘아저씨’에 대한 친근한 표현으로 칭하기도 한다.

이 사건은 진짜 제2의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사건입니다.

진짜 하루빨리 사법부가 정신좀 차렸으면 합니다.

판사 한 사람이 맡는 사건의 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생각이 모두의 생각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현재 대한민국의 법이라면 사법부도 입법부와 행정부처럼 직선제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¹⁷⁾

위의 댓글에서와 같이 이번 판결을 국가폭력으로 지칭되며, 이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은 ‘국가폭력’에 맞선 ‘민주화’를 위한 열망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민주주의를 단순히 다수의 의견대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다수의 법감정에 역행하는 비민주적인 것이 된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에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다는 점에 더해, A커뮤니티에서 증폭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확증편향은 본인들의 견해를 상식의 지위에 올려놓는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한국 남성’이란 범주가 집단적 피해자로서 구성되고 있으며, 현재 성폭력 관련 법제에 문제제기하는 것은 일종의 민주화로 의미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 관련 현행 법제도가 문제적이라는 것이 사회 보편적인 해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행 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해악이 성별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임을 제기하기 위해 이 사건을 둘러싼 담론들은 가족주의와 결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A 커뮤니티에 최초로 글을 올린 발화자가 ‘가해자의 아내’라는 점에서 예견된 것이었다.

3. 가족주의¹⁸⁾를 통한 성폭력의 부정

1) ‘아내’의 발화를 통한 성추행 사건의 부정

이 사건이 최초로 A 커뮤니티에서 이슈화된 것은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아내의 글이 올라오면서부터였다. 이 글은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징역6개월을 선고받은 남편의 사건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 글은 CCTV를 통해 남편의 손이 직접적으로 피해여성에게 닿았는지 확인불가능하다는 점, 판결의 과도한 형량은 남편의 혐의 부인에 따른 과심죄 때문이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남편의 성실성과 좋은

17) 중***** (2018), “[곰탕집 성추행 팩트]변호사가 사임한 진짜 이유” 게시글의 댓글, A커뮤니티, 2018.09.12. <https://bit.ly/2J3MxDM>

18) 이 연구에서 가족주의란 행위주체의 행위와 태도 결정에 있어, 가족의 유지 및 가족 단위의 연대를 우선시하는 가치체제로 정의하고자 한다(박혜경, 2011:75).

평판을 강조하며 피해 여성의 증언을 부정한다. 한국사회에서 성적인 문제와 관련한 법이 남성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으며, 남편이 그 법에 악용되지 않게 도와 줄 것을 호소한다.

이 글에서 ‘가해자의 아내’라는 발화자의 위치는 성폭력 사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특정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가해자의 아내’는 ‘여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해석에 객관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낳는다. ‘가해자의 아내’가 처음 올린 위의 글에서는 “같은 여자로서 아무리 그 여자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 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같은 여자지만 사람 하나 성추행범 만드는 거 일도 아니네요” 등의 표현을 통해 “같은 여자로서”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발화 전략은 여성 범주를 강조함으로써, 두 여성이 사건과 맺는 다른 관계와 맥락을 삭제하고 평면적으로 만든다. 현재 두 여성의 사건을 둘러싼 이해관계, 위치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여성’도 동의할 수 없다는 발화는 파급력을 갖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이 이해되어 온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실제로 여성들의 해석이 성폭력의 해석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마치 성별화된 여성의 감정에 따라 성폭력 여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낀다고 하면 성희롱(성폭력)이다.’와 같은 표현이다. 이는 사법영역 바깥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판단기준이 (많은 경우 여성이었던) 피해자에게 일임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온 상황(권김현영, 2018)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라는 위치는 마치 성폭력에 대한 해석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간주된다. 따라서 ‘같은’ 성별인 ‘여성’도 이 사건의 진위 및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피해 여성의 사건 해석 및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2) ‘가정파괴’로 재구성된 ‘피해’

‘가해자의 아내’ 발화의 가장 큰 효과는 성폭력 사건 피해의 내용을 ‘가정파괴’의 문제로 재구성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이 사건의 서사는 A커뮤니티 내에서 가족의 서사를 통해서 유통되고 이해되고 있다. 우선 해당 사건을 언급할 때, 가해자가 대부분의 글과 댓글에서 “남편분”으로 지칭되고 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건이 ‘억울한 아내’의 호소로 가시화되었던 것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는 일반적인 성추행/성희롱 사건과 다른 서사로 이 사건을 읽히게 한다. 지금까지의 언론보도에서의 성추행/성희롱의 재현은 많은 경우,

피해여성-가해남성 두 사람 간의 구도로 재현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재현구도에서는 비록 피해여성이 피해자화 되고, 가해남성이 비정상적인 존재로 그려질지 언정, 피해 여성의 ‘고통’이 주목되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서사의 주체가 ‘억울한 아내’가 되었을 때, 가해자는 ‘억울한 아내’의 남편으로 지칭되며, 사건을 신고한 여성은 이 두 부부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존재로 그려지게 된다. ‘억울한 아내’를 중심으로 한 서사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의 피해는 가해자 가족의 위기와 파괴로 나타난다.¹⁹⁾ 이로 인해, 사건의 ‘피해자’는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를 포함한 가족전체가 되며, ‘가해자’는 이 사건을 신고함으로써, 한 가정을 파괴한 피해여성이 된다.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피해자 구도는 “가정의 풍비박산” 앞에 역전되는 것이다. 앞 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피해여성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피해의 내용이 ‘가정파괴’로 역전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가정의 파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사실상 가정의 위기와 그로 인한 가정의 파괴로 이해되고 있다. 가해자를 표현하는 말 중에 빠지지 않는 표현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표현이다. ‘아내’의 발화에서도 ‘가해자’는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사람”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1인기업 사장이자 가장인 B씨” 등으로 서술된다. 이에 공감하는 댓글들에서도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공감을 표하는 글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가장을 집으로~”와 같은 댓글 역시 이 문제의 해결을 억울한 위기에 처한 가정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의미화하고 있다. 조은(2008)은 IMF 이후, 부권 위기담론을 통해 중산층 가족의 경제적 위기가 젠더화된 양상으로 등장함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권 위기 담론과 가족의 위기가 연결되게 된 지점에는 남성 가족 부양자 이데올로기가 놓여있음을 지적하였다(조은, 2008). 이 사건의 경우, ‘아내’가 올린 글을 보면, 실제로 ‘가해자’의 자영업에서의 수입이 가정의 유일한 수입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해자’의 구속은 이 가정의 경제적 조건을 어렵게 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 대한 커뮤니티 회원들의 ‘가장’으로서의 적극적인 공감대,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위기만으로는 환원되지 않는, ‘가장’이라는 상징적 지위의 반복되는 강조는 단순한 경제적 측면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IMF 위기 당시 부권의 위기가 가정의 위기라는 의미를 가졌던 것과 같이,

19) 이 논문에서 다루지는 않았으나, 유사한 시기에 이슈가 되었던 안희정 성폭력 사건 역시 안희정의 부인 민OO씨의 증언은 해당 사건의 법정공판에서 큰 변곡점이 되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은 성폭력의 문제가 아닌, 가정을 훼손하는 불륜의 문제인 것처럼 다루졌다. 특히 TV조선의 경우, 이 사건을 안희정과 안희정 부인, 피해자의 삼각관계의 문제인 것처럼 프레임을 짜거나, 안희정 부인의 발언을 인용해가면서, 부인과 피해자의 양자대결인 것처럼 방영하였다.(김언경, 2018:27-29)

‘가장’의 위기 자체가 가정의 위기로 이해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이 ‘성추행 사건’ 가해자의 처벌은 가족 전체의 피해로 서술되며, 피해의 주어는 ‘우리 가족’이 된다. “물론 본인의 주장 때문에 저희 가족은 이 꼴이 났지만...”, “우리 가족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와 같은 ‘아내’ 게시글의 표현들은 모두 이 판결로 인한 ‘우리 가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몇몇 커뮤니티 회원들의 수사에서도 두드러진다. 이러한 표현들에서는 훼손된 가정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래의 예시에서와 같이 진부하다 싶을 만큼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이성애 핵가족의 이미지가 적극적으로 차용된다. 사건 이전의 가정은 이상적이고 행복한 가정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해당 가정에 초래한 결과는 더욱더 비극적인 것으로 대비되는 효과를 낳는다.

“웃으며 출근한 남편, 아빠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입니다.”

“CCTV에 보이는 저 사건으로 행복했던 가정이 박살났고...”

“누가 이 가장과 가정을 죽이고 있는 겁니까?”²⁰⁾

A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을 ‘억울한 아내’의 호소를 통해 가시화된 한 가족의 위기로 재구성함으로써, 현행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맥락화 한다. 그리고 단순히 남성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가족의 피해로 명명함으로써, 현행 성폭력 관련 법제로 인한 피해는 남성만이 아닌, ‘평범한 가정’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의미화 된다.

3) 가족의 피해와 동일시되는 ‘여성’의 피해

피해가 ‘가정 파괴’로 재구성됨으로써, 발생하는 가장 큰 효과는 ‘여성’이라는 기표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가족주의적 맥락 속에서 발화됨으로써, 젠더 권력관계에 대한 페미니즘적 문제제기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A 커뮤니티의 일부 게시글과 댓글들에서는 해당 글을 읽고 있을 여성독자들을 상정하며, 그들을 설득하려는 화법을 구사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 문제를 가족의 문제로 위치시키면서, 당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20) 유**(2018),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최고책임자의 호소문” 게시글, A커뮤니티, 2018.09.08. <https://bit.ly/2N3FhNu>

“[...] 이 일은 절대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나 대결이 아닙니다. 내 아빠, 내 오빠, 내 남편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속된 분의 아내도 여성이고 아이도 피해자입니다. 여성들께서도 이 구속사건 자체를 상식적으로 바라봐주시시오[...]”²¹⁾

“[...] ps: 마지막으로 많은 페미성향의 여성분들에게 한마디. 법이 이렇게 됐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고아이면서 결혼도 안할 계획이 아니라면 결국 그 피해는 당신에게 옵니다. 당신에게는 아버지 오빠 남동생 남편 아들 등의 수많은 남성 가족들이 있으니깐요.²²⁾

위의 글에서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이 당신의 남성가족일 수 있으며, 결국, 그로 인한 피해 역시 여성에게도 돌아간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두 번째로 인용된 글은 자칭 성폭력특별법이 악법임을 몇 년 동안 홍보해 온 게시자가 적은 글로서 더욱 공격적인 어조이긴 하지만, 위의 인용과 같은 논리를 깔고 있다. 즉, 성폭력 관련 법제의 피해는 (남성)가족 구성원을 경유해서 결국 (여성인) 너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논리이다. 여기서 ‘여성’의 위치는 ‘정상가족’ 내의 아내, 딸, 여동생의 위치로 이야기된다. 이러한 논리가 흥미로운 점은, 사회적으로 성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할 때 클리셰로 사용되는 ‘네 부인/딸/어머니가 당했다고 생각해봐라’와 같은 논리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성폭력의 피해란 가족 내의 ‘다른 성별’을 통해 체험되는 피해에 근거하고 있으며, 최근 미투운동의 백래시 속에서 가족주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름이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라는 점은 현재 이 사건의 피해가 무엇으로 간주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A 커뮤니티의 게시물과 댓글들은 반복적으로 ‘여성’들을 ‘정상가족’ 내의 아내, 딸, 여동생으로 위치시키며,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여성’과 ‘남성’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것으로 전제한다. 한 가족의 단일한 이해관계를 전제함으로써 가족 내 남성구성원을 ‘억울’하게 만들 수 있는 한국의 성폭력 관련 법제는 ‘여성’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제도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 내용의 재구성은 A 커뮤니티의 남성-약자 서사와 맞물려, ‘젠더폭력’, ‘성차별’ 등을 논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문제제기를 비상식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21) 유**(2018),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최고책임자의 호소문” 게시물, A커뮤니티, 2018.09.08. <https://bit.ly/2N3FhNu>

22) 약***(2018), “"억울하게 성범죄자 안되는 법" 카페 운영자입니다.” 게시물, A커뮤니티, 2018.09.07. <https://bit.ly/2L5AgSe>

4. ‘가해자의 아내’를 통해 구축된 ‘정의로운’ 남성성

이 사건의 ‘피해’가 가정의 파괴로 맥락화 되면서 페미니즘의 문제제기가 무력화되는 가운데, A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스스로를 ‘상식’에 입각한 ‘정의로운 존재’로 구축해나가고 있었다. 김수아·이예슬(2017)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여성혐오에 문제제기하는 ‘비정상적’ 대상을 비판하며, 스스로를 ‘상식적’인 존재로, ‘보편적인 윤리’의 대변자로 자칭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A 커뮤니티 역시 ‘여성편향적’ 성폭력 관련 법제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불합리한 사법제도’에 문제제기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제 위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지지와 지원은 ‘상식’을 지키는 정의로운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A 커뮤니티에서 회원들 스스로를 정의로운 존재로 구성해나감에 있어 두드러지는 것은 실천하는 것에 대한 강조이다. A 커뮤니티 회원들은 교통사고나 불법주차, 알바생에 대한 ‘갑질’의 문제 등에 관련된 증거영상을 종종 게시하며, 해당 사진 혹은 영상을 통해 관련인의 신상을 밝히려 수색하기도 한다. 사건을 가시화하고, ‘비상식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신상을 조사하고 이슈화시킴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는 일종의 자경단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A 커뮤니티 회원들이 스스로를 ‘정의로운 존재’로 구축해내는 과정에는 ‘상식’에 기반하여 실천한다는 지점이 전제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A 커뮤니티 회원들이 스스로를 ‘정의로운’ 존재로 구축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식에 기반한 실천 그 이상의 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정의로운 존재와 구별되는 ‘약자’가 필요했다.

“저와 상관없는 남일이지만 님의 정의로운 행동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²³⁾

“추천하고 약자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억울한 누명을 벗어야지요.”²⁴⁾

“OO는 ㅋㅋㅋ 약자편 정의 가즈아!!!”²⁵⁾

위의 댓글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A 커뮤니티에서 ‘정의로움’은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처럼 나서는 행위이며, 특히 ‘약자’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것

23) 희***(2018), “베스트부탁합니다. 저희형님께서 변호사인데 도움주신답니다”게시글 댓글, A커뮤니티, 2018.09.08. <https://bit.ly/2XqmKiv>

24) a***** (2018), “베스트부탁합니다. 저희형님께서 변호사인데 도움주신답니다”게시글 댓글, A커뮤니티, 2018.09.08. <https://bit.ly/2XqmKiv>

25) 스***** (2018), “베스트부탁합니다. 저희형님께서 변호사인데 도움주신답니다”게시글 댓글, A커뮤니티, 2018.09.09. <https://bit.ly/2XqmKiv>

으로 의미화 된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타인’을 위해 실천하는 ‘정의로운’ 존재는 도움의 대상으로서의 ‘약자’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약자를 돕는 행위’로서의 ‘정의로움’은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무력하고, 취약한 존재로 구성해낼 우려가 있다. 이 사건에서 ‘약자’는 억울한 누명을 쓴 남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사건의 억울함을 호소한 ‘아내’로 재현되고 있다. A 커뮤니티 회원을 정의로운 존재로 구성해내는 것은 ‘가해자의 아내’를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함으로써 가능했다.

이 사건을 처음 가시화한 ‘가해자의 아내’는 A 커뮤니티의 회원들과 대조적으로 수동적으로 재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가해자의 아내’의 재현방식은 특히 이 사건의 지지자가 ‘가해자의 아내’를 지칭할 때 두드러진다. 심지어 이와 유사한 사건의 피해자로 소개하는 다른 사건의 ‘가해자의 아내’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드러낸다. 이러한 유사성은 ‘가해자의 아내’를 특정한 방식으로 위치시키면서, 이를 통해 해당 메시지의 수신자들(여기에서는 커뮤니티 회원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해낸다.

이러한 ‘아내’의 재현은 주로 그러한 아내의 억울함과 호소에 응답하는 일반 시민 혹은 커뮤니티 회원들과의 대비 속에서 서술된다. 예를 들어 아내가 청와대에 올린 청원과 그에 대한 (게시글 당시) 28만 5천명의 서명은 “아내의 울부짖음”에 “응답”한 것으로서 서술된다.

“누가 길에서 힘없이 자빠져 엎드린채 엉엉 울고 있는 여인네의 절규에 귀기울이고 그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정말 정의로운 분들입니다.”²⁶⁾

게시글을 올린 아내는 “길에서 힘없이 자빠져 엎드린채 엉엉 울고 있는 여인네”로 묘사되고 있다. 여기서 ‘울부짖음’, ‘절규’와 같은 표현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이 ‘아내’는 매우 감정적인 존재인 것으로 묘사된다. 이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다른 남성의 아내가 올린 글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다. 그 글에서는 스스로를 “가슴을 치고 몰래 눈물을 흘리는 아내”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억울함이 치달아 감정적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힘없이 자빠져 엎드린 채 엉엉 울고 있는”이라는 표현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내’의 상태를 묘사한다. 즉, 이 사건에서의 ‘아내’는 능동성을 잃은 무력한 존재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초에 사건을 이슈화하고,

26) 유**(2018), “<곰탕집 성추행사건> 후원통장 개설에 대한 아내분의 입장” 게시글, A 커뮤니티, 2018.09.14. <https://bit.ly/2L2Xmc1>

이후 항소심을 알아보는 등의 모습을 보인 ‘아내’는 이 사건의 주요한 행위자이며,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가해자의 아내’와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한다는 지지자의 위와 같은 묘사는 커뮤니티 회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한 특정한 전략 속에서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리사 요네야마는 *Cold War Ruins*에서 2차 대전에서 미국의 승리가 확실시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일본 여성들이 일본 남성의 억압에 놓여있는 수동적인 존재로 재현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재현이 일본 여성을 억압에서 구원하는 정의로운 존재로 미국을 구성해내고 있음을 분석한다. 즉, 특정한 대상을 수동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특정한 존재들을 구원자로서, 주체로서 구성하는 것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Yoneyama, 2016). 이와 유사하게, 위와 같은 게시글들에서 능동성을 상실한 아내에 대응하는 항으로서 정의로운 시민/커뮤니티 회원들이 배치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감정적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수동적인 상태로 남아있는 ‘아내’의 발화를 듣는 것, 응답하는 것, 그리고 그 ‘아내’를 지지하는 것은 A의 커뮤니티 회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노골적으로 ‘정의로운’ 존재로 명명된다. 오히려 ‘실제와 달리’ 묘사되는 ‘아내’의 무력함에 대한 묘사는 커뮤니티 회원들의 지지와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보이며, 이 메시지의 수신자인 커뮤니티 회원들을 ‘정의로운’ 존재로 구성해내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 회원들은 A커뮤니티가 남초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남성으로 상상되고, 이들은 서로서로를 “형님”들 “아재들”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남성연대를 강화한다. 코넬(2005[2013])은 ‘남성성’을 ‘여성성’과의 대비를 통해 구성되는 관계적 개념이자, 남성들 내부에서도 포함과 배제를 통해 역동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코넬의 남성성 개념을 적용해본다면, 이 사건을 둘러싸고 A커뮤니티에서 드러나는 ‘남성성’은 ‘가해자의 아내’와의 대비를 통해 구성되는 측면이 있다. 위에서 제시한 대로, ‘아내’는 감정적이고, 무력한, 수동적인 존재로 재현된다. 이와 대비되게도, 남성으로 표상되는 다수의 A커뮤니티 회원들은 위의 호소에 응하여 주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실천적인 존재로 표상된다.

5. 결론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의 사례와 같이, 최근의 미투운동 이후, ‘가해자의 아내’의 발화는 피해 여성의 문제제기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글은 이를 대표적인 남초 커뮤니티인 A 커뮤니티의 사건 관련 게시글과 댓글들을 분석함으로써, ‘가해자의 아내’의 발화가 어떻게 의미화되며, 성폭력 사건의 이해

에 있어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A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남성-약자 서사 속에서 이번 사건을 여성편향적인 국가와 남성의 구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대다수 커뮤니티 회원들은 ‘평범한 한국의 중년남성’으로서의 가해남성에 이입함으로써, 한국남성은 집단적으로 사법폭력의 피해자로 여겨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증거의 증거능력은 일방적으로 부정되며, 오히려 사법부의 여성편향적 태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

위와 같은 해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가해자 아내’의 발화를 경유함으로써 가능해졌다. ‘가해자의 아내’의 발화를 통해 해당 성추행 사건은 같은 ‘여성’이 보아도 이해되지 않는 사건으로 설명된다. 더 나아가 ‘가해자의 아내’의 발화는 가족주의 담론과 결합하여 피해의 내용을 피해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서 가정파괴로 의미화 시킨다.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가해-피해의 구도가 역전되는 것이다. 즉, 가정을 지키려는 ‘아내’와 ‘가해자’는 피해여성과 여성편향적 사법부(국가)에 맞서는 피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 관련 현행 법제는 가정 파괴라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피해를 낳는 것으로 인식되며, 이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은 정당성을 확보한다.

‘가해자의 아내’의 발언은 남성-약자 서사의 정당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에 문제제기하는 A 커뮤니티의 남성들을 ‘정의로운’ 존재로 구축하는데 일조한다. 여기에서 ‘정의로움’이란 젠더를 지우는 방식의 ‘상식’을 견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생각지 않고 ‘약자’를 돕는 것으로 의미화되고 있다. 따라서 가해자의 ‘아내’는 감정적이고, 주체성이 삭제된 무력한 존재로 재현됨으로써, A 커뮤니티 회원들의 ‘약자’를 돕는 ‘정의로운’ 남성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페미니즘과 미투 운동에 대한 백래시가 성폭력 피해를 가족주의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고, ‘여성’을 특정 방식으로 재현하는 것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주의와 결합된 ‘여성’이라는 기표의 반복적 사용은 오히려 페미니즘이 제기해 온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참고문헌》

- 권김현영(2018), “피해자중심주의는 여성주의 원칙인가”, 『문학동네』, 96, 581-600쪽.
- 김수아·이예슬(2017),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약자 서사 구축”, 『한국여성학』, 33(3), 67-107쪽.
- 김수아(2017),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페미니즘 주제 토론 가능성”, 『미디어, 젠더 & 문화』, 32(3), 5-45쪽.
- 박혜경(2011) “경제위기시 가족주의 담론의 재구성과 성평등 담론의 한계”, 『한국여성학』, 27(3), 71-106쪽.
- 조 은(2008),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가족 정치의 지형 - 계급과 젠더의 경합”, 『한국여성학』, 24(2), 5-37쪽.
- Connell. R. W.(2005), *Masculinities*(2nd ed.), 『남성성/들』, 안상욱, 현민 옮김, 서울: 이매진, 2013.
- Sakai, Naoki(2010), “On Romantic Love and Military Violence - Transpacific Imperialism and U.S.-Japan Complicity”, *Militarized currents toward a decolonized future in Asia and the Pacific*,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205-221.
- Yoneyama, Lisa(2016), *Cold War Ruins: Transpacific Critique of American Justice and Japanese War Crim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기타자료

- 청와대 홈페이지(2018),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 (검색일:2018.10.06.)
- 손정빈(2018), 『뉴시스』, 2018.10.6. “오늘은 여성, 27일엔 남성... '혜화역 시위' 성대결의 장으로.”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05_0000435600&cID=10201&pID=10200 (검색일:2018.10.08.)
- 윤세미(2018), 『아주경제』, 2018.9.25. “美 대법관 지명자 캐버노 "성폭행 한 적 없다".. 인준 위기 정면돌파”
<https://www.ajunews.com/view/20180925124859980> (검색일: 2018.10.28.)
- 정민경(2018), 『미디어오늘』, 2018.9.28. “[단독] ‘곰탕집 성추행’ 피해자가 인터뷰 나선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701#csidx55a5a8766b4011f8ee2982556db4900>

젠더 폭력의 (탈)피해자화: 국가와 페미니즘 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¹⁾

버클리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박주현

젠더 폭력의 (탈)피해자화

2020.02.18 한국성폭력상담소 네트워크 포럼
박주현 jp53@berkeley.edu

INDEX

01



연구 질문

02



선행 연구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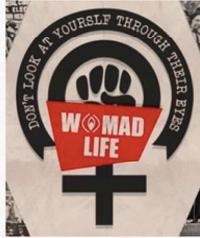


연구 설계

1) 본 원고는 아직 작성중인 것으로 인용을 금합니다.

01
연구 질문 

예쁜 계획적인
공격적인
합리적인 공감 못생긴 용기
힘 없는 나쁜 유
취한 못된 남
보복 선량한 남
문제



01
연구 질문 

피해자 = 사회적으로 구성
되는 정체성
(Holstein & Miller 1990; Benford &
Snow 2000; Davis 2005)



피해자의 경험과 고통



대중적 공감, 동정심



가해자 고발과 처벌

01
연구 질문 

‘좋은’ 피해자?



젠더 권력의 공고화

‘순수한’ 아동과 여성성, 피해자의 자격,
엄마의 범죄 예방 역할



차별과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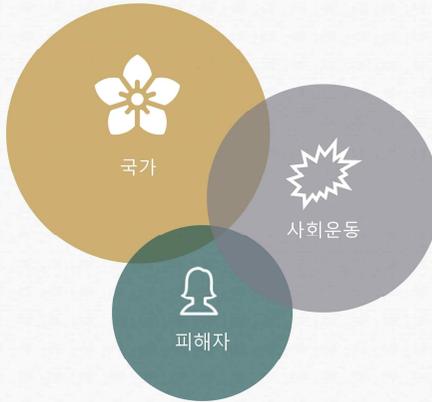
가해자의 구분, 강화되는 사회 통제,
가해자 처벌 =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피해자와 피해자 카테고리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Armstrong 1978),
무력함에서 능동적 선택으로 (Hoff 1990; Kelly 1998)

01
연구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상담소의 업무)

1.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3.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4.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예의 동행
5.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01 연구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상담소의 업무)

1.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3.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

서울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부, 성폭력피해지원팀, 성폭력피해지원센터, 서울해바라기센터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라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KOREA GENDER VIOLENCE CRISIS CENTER

인사팀	상담지원
주요활동	의료지원
연혁	법적지원
함께하는사람들	관계기관연계
오시는 길	무료법률지원

01 연구 질문



02 선행 연구



남성 국가와 페미니즘

- 남성 국가
 - 남성적인 국가와 자유 시민 만들기 (Scott 1988; Adams 2005; Brown 1995)
 - 젠더 속성과 역할: 평등-다름, 공-사, 권리-필요 (Federici 2012; Dalla Coasta 2015)
 - 가부장제 가족의 지배 형식을 모방, 확장하는 국가 (Walby 1990; Adams 2005)
- 국가와 페미니즘의 만남
 - 젠더 폭력에 대한 강력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 (MacKinnon 1989)
 - vs. 국가 엄벌주의의 위험성 (Brown 1995; Minow 1992; Bumiller 2008)
 - ‘테라피 국가’ (Bumiller 2008), 기업의 사회적 책임 (Bernstein 2016), 자조와 사회적 서비스, 탈정치화 (Fraser 2015), NGO 외주화 (Chun & Kim 2018)
- 페미니즘의 타협과 극복?
 - 반박 연구들 (Funk 2013; Luxton & Sangster 2013; Ferguson 2017)
 - 경찰서에서 직접 사건 조사, 진행하는 피해자 (Roychowdhury 2015), 가사노동의 전 문화 (Chun & Kim 2018)

02 선행 연구



남성 시민 사회와 페미니즘

- 한국 사회의 남성성
 - 남북의 군사적 대립, 징병제, 국가와 시민사회의 폭력,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한 양가적 감정, 가부장제 전통에 대한 노스텔지어 (권민숙 2001, 문승숙 2002)
 - 자본/재벌/국가 중심 산업화와 신자유주의 -> 젠더 분업 (Brinton 1993; 구해근 2001; Chun 2009; 김경희 2009; 신상숙 2011; Barraclough 2012)
- 한국 시민 사회의 남성성
 - 노동운동, 국가주의와의 관계 (조주현 1996; 김희강 2009)
 - 가부장제를 보충하는 예와 돌봄 (Han & Ling 1998)
 - 페미니즘 정책 vs. 가족주의 정책 (김승경 & 김경희 2011)
 -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과 상담소 분리 (서두원 2012)

02 선행 연구



젠더 폭력과

법률, 의료, 사회복지

- **섹슈얼리티 문제와 페미니즘**
 - 90년대에서야 문제화, 가족주의에 종속 (서두원 & 박인혜 2014)
 -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가해자 면죄 (추지현 2014)
- **법률**
 - 2000년대 중반 성범죄 기사화, 온정적 양형과 과도한 보안처분 (추지현 2017)
 - 피해자센터의 법적 지원 부족 (여성가족부 2017), 모호한 법의 남성중심적 해석 (김현아 2017),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김상준 2013)
- **의료**
 - 인공 임신 중절의 어려움 (전종설 외 2014), ‘선문석’ 상남과 ‘페미니스트’ 상남 (서두원 2012)
 - 진료 기록과 수사/법률 증거 (Chun & Kim 2018), 성범죄의 정신질환화 (추지현 2014)
- **사회복지**
 - 보건복지부의 쉼터 평가와 평가 거부 (김육녀 2016)

03 연구 설계



참여관찰, 인터뷰, 아카이브 분석



연구자의 고민



- ✓ 피해자의 위치
- ✓ 국가와 사회운동의 경계
- ✓ 온라인 사회운동



감사합니다



연구활동가 발표 세션2

HPV 백신의 젠더화와 십대 여성의 섹슈얼리티

_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김보영

20대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페미니즘'과 그 의미

: '페미니즘'들 속에서 '나의 페미니즘' 만들기

_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석사 오혜진

HPV 백신과 십대 여성의 섹슈얼리티¹⁾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김보영

1. HPV 백신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본 연구자는 석사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 연구를 통해 HPV 백신에 관한 한국 사회의 담론 지형을 파악하고, 이 담론들이 의미하는 바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의 필요성은 생의료기술(biomedical technologies)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는 중대한 요소로 이미 자리 잡은 것에 기인한다. 사람들의 삶은 이제 의료기술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 맺지 않을 수 없다. 영유아 예방접종에서부터 완화의료를 통해 죽음을 맞이하는 것까지 삶의 전 과정이 의료 기술과의 연관 속에 놓여있게 되었다. 인류학 혹은 여성학 연구가 어떤 관점으로 사람들의 삶에 깊이 연루된 의료의 장에 개입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어떤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지, 이 지식이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어떤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본 연구 과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

기술은 특정 종류의 지식, 믿음, 욕망 그리고 실천으로 구성된 문화나 일련의 사회적 관계를 포함(발사모, 2012:29)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료 기술에 관한 분석은 특정한 의료적 지식과 믿음, 다양한 행위자들의 욕망, 한국 사회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규범들에 대한 해석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이 사람들의 사회적 삶을 결정한다거나 그 역을 주장하고자 함은 아니다. 또한 사회 변화가 과학과 기술의 발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기술이 ‘사회적인 것’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과학기술학(STS,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연구자들은 ‘과학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상호구성을 공동생산coproduction이라 부른다(순데르 라잔, 2012:18).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공동생산의 장을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궁경부암에 관한 ‘위험’ 담론이 HPV 백신 수입을 기점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나아가 HPV 백신 접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일환으로 제도화될 때 의료의 장 안에서 십대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의미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에서는 우선 의료계와 ‘국가’, 즉 전문가들의 담론장을 통해 자궁경부암에 대한 ‘위험’이 HPV 백신과 관련하여 어떻게 구성되며 백신 피접종 대상인 여성들은 이 ‘위험’ 담론을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분석한다. 백신이라는

1) 본 원고는 아직 작성중인 것으로 인용을 금합니다.

물질은 애초에 미래에 예견되는 위험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발명되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위험은 중심적인 개념으로 위치하게 된다. 또한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과 깊은 관계를 맺는만큼 암에 대한 위험과 공포가 백신 접종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험은 전문가들이 연구와 규제 의 현장에서 측정·계산·평가하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행위자들의 발화와 실천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며 공적인 장에서 위험은 단지 자연적 현상에 한정되지 않고 담론을 통해 다양한 의미가 부여된다(하대청, 2014). 예컨대 Hajer(2005)는 연구에서 환경정책에 관한 담론들을 분석하면서 환경위험의 실재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이것이 사전에 주어진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과 실재성이 특정한 담론적 구조 속에서 구성된다고 보았다(하대청, 2014:239, 재인용). HPV 백신 접종도 자궁경부암에 대한 위험 담론에 기대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궁경부암 자체에 대한 위험 담론은 백신의 도입을 기점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HPV 백신은 암을 예방하는 최초의 백신이라는 명성을 업고 그 시장을 확대해간 백신으로 암 발병의 원인을 HPV라는 바이러스를 통해 설명하면서 암에 대한 위험 담론과 상상력 자체를 바꿔놓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위험 담론의 변화들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이 위험 담론이 촉발시킨 HPV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화를 분석한다. HPV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은 2016년부터이다. 국가는 2016년부터 만12세 여성들에게 HPV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HPV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자리잡기까지 여러 요인이 작용했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 다양한 담론들이 활용되었다. 특히 연구자는 백신 접종 대상이 되는 만12세 여성을 포함한 십대 여성에 대한 특정한 섹슈얼리티 규범이 이 사업의 정당성을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주요한 지점이라 주장한다.

HPV 백신은 여성의 건강을 돌보는 실천과 여성 신체에 대한 개입의 형태를 재형성한 의료 기술 중 하나(Carpenter&Casper, 2009)인데 이러한 HPV 백신의 등장이 자궁경부암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그리고 백신 피접종 주체들은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해석하며 수용하는지, 이 과정에서 구성된 ‘위험’ 담론들과 십대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어떻게 조우하는지를 살펴보면 HPV 백신이라는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작용을 규명하는 것이 논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본 발표에서는 십대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2. HPV 감염과 백신에 관한 간략한 설명

HPV는 매우 흔하게 감염되는 바이러스 중 하나로 대부분은 별도의 조치 없이 치료가 되기도 한다. 대한부인종양학회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18~79세 여성 60,775명을 대상으로 한 HPV 감염실태 논문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의 34.2%(20,787명)가 HPV에 감염되어 있었다. 여성 중 17.5%(10,628명)는 자궁경부암과 같은 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고위험 HPV에, 16.7%(10,159명)는 생식기 사마귀를 일으키는 저위험 HPV에 감염되어 있었다. HPV 감염률은 18-29세에서 49.9%로 가장 높았으며, 70-79세에서 36.6%로 다시 증가하는 U-shape의 형태를 보여주었다(김재훈, 2016). 한편 2020년부터 HPV는 법정감염병 4급에 포함이 되며 HPV 감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HPV 감염으로 인한 발생 가능 질병에는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항문암, 외음부암, 생식기 사마귀 등이 있다. 또한 HPV는 주로 성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성매개감염병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명명으로 인해 HPV 백신은 HPV 감염 예방보다도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백신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많은 피접종자들 또한 HPV 백신을 성병과 연결짓기 보다는 암 예방에 초점을 맞춰 백신을 맞고 있다. HPV 백신 접종 경험에서 성 감염이나 자궁경부암이 가지는 성병으로서의 속성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박정은, 2013).

현재 시판되는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HPV 중 일부 고위험군 유전형(strain)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아니다. 백신을 접종 받고도 자궁경부암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궁경부암 예방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 자궁경부암의 발병 요인에는 HPV뿐 아니라 조혼이나 남성의 혼외 관계에 너그러운 문화적 요인, 잦은 출산, 여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있으며, 조기검진에 실패하게 되는 것은 출산과 상관없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에 낙인을 찍는 사회문화나 공중보건 체계 등 전반적인 여성의 의료접근권과 관련있다고 볼 수 있다(백영경, 2012). 하지만 자궁경부암이 백신만으로 예방가능하고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의 유일한 원인처럼 알려지면서 백신은 건강한 자궁을 위한 필수 선택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2007년 HPV 백신 중 하나인 ‘가다실’이 식약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백신 설명회와 공동구매 등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산부인과학회를 중심으로 하는 퍼플리본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백신 도입 초기에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각종 사회재단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백신 지

원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백영경, 2012). 이러한 계기들을 통해 HPV 백신은 한국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2016년부터 국가가 만12세 여성을 대상으로 HPV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하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행하면서 접종은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

3.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3.1. 사업의 시작

HPV 백신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회 접종당 2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고 연령에 따라 2-3회 접종이 필요하다. HPV 백신은 다른 백신에 비해 고가인 까닭에 비용의 문제로 백신 접종을 망설이던 사람들, 특히 여성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HPV 국가예방접종사업인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은 반가운 소식이기도 했다. 정부의 지원으로 만12세 여성은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고 피접종자의 건강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공중보건 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성장 발달과 초경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고, “사춘기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우며, 백신 “접종을 통해 HPV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만12세가 접종 대상이 된 것은 HPV 백신의 성격 때문이다. HPV 백신은 HPV 감염이 있기 전에 접종을 할 경우 항체 형성의 효과가 더욱 높으며, 기존에 세 번 접종을 해야 하는 HPV 백신이 특정 나이 이전에 접종을 할 경우 두 번만 접종해도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는 연구결과 발표에 의한 것이다²⁾. 한국의 경우에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HPV 백신을 도입하기 이전에 경제성 분석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경제성 분석은 이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비용-효과’ 정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정책 도입 및 시행에 있어 주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세 번 접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HPV 백신은 국가예방

2) 접종 횟수에 대한 연구에서 2가 백신의 경우 9-14세 소녀를 대상으로 2회 접종과 이전의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실제 임상적 효과를 나타낸 15-25세 연령의 3회 접종군을 비교하였을 때 9-14세 연령의 2회 접종군이 15-25세 연령의 3회 접종군에 비하여 항체 형성이 비열등하거나 우월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4가 백신의 경우에도 9-13세 여아에서는 효과가 입증된 16-26세 여성에서 3회 접종군에 비하여 항체 형성이 열등하지 않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WHO에서도 2014년 10월에 HPV 백신접종을 9-13세 소녀를 대상으로 2회 접종으로 변경하였다. 단 2회 접종 시에는 두 백신 모두 첫 접종 후 6개월 이후에 두 번째 접종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한편 15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두 백신 모두 기존과 같이 3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김재훈, 2016).

접종사업으로 도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두 번 접종만으로 예방의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일환으로 HPV 백신이 도입되었다.

또한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의 바탕에는 의료계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한국산부인과학회를 중심으로 여러 산부인과 의사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음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고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법 개정 요구가 있기도 했다. 2011년에 한나라당은 영유아아동의 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4월 만 11-12세 여성들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역시 국가 부담으로 진행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박혜수, 2018:2).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았다.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불임의 원인이 되는 자궁 경부암 발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자궁경부암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인“제2군감염병”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음. 따라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예방접종 항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포함하여 자궁경부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가적인 문제인 저출산에 기여 하고자 함.³⁾

이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에는 우선순위가 낮다고 판단하여 법안의 논의는 미뤄졌다(박정은, 2013). 이후 2016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HPV 감염증)이 성매개감염병 종류에 추가되었다. 개정 이유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질의한 정보공개청구 자료에서 보건복지부는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이하 "정기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와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조항을 꼽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4호에 따

3) 월간 입법동향 <2012.9>

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8호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1) 장티푸스, 2) 인플루엔자, 3) 신증후군출혈열, 4) A형간염, 5)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이다. 또 HPV 백신 접종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62> 행복한 임신과 출산(만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 본인부담 폐지 및 항목 확대 추진)의 영향으로 진행된 것이기도 하다.

3.2. 사업의 목표

HPV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일환이 되기까지 여러 법률적, 정치적 근거들이 마련되는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자궁경부암 예방 외에 사업의 또 다른 목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목표는 “모성 보호를 통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법률 개정 움직임에서도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등장했었다. 정부는 현재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꼬마숙녀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다. ‘꼬마숙녀’는 사업의 대상인 만12세 여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꼬마’도 아닌, 그렇다고 성인 여성 즉 ‘숙녀’도 아닌 그 사이에 존재한 12세 여성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꼬마숙녀’는 백신 접종을 통해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고, 건강한 자궁을 가진 건강한 ‘숙녀’가 되기를 기대 받는다. 백신 접종을 통해 ‘꼬마숙녀’는 높은 확률로 건강한 자궁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며, 건강한 ‘숙녀’라면 생애과정에 출산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출산을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화’대책을 분기별로 내놓고 있는데 HPV 접종 사업도 그 일환으로 소개되고 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보면 국가는 여성의 건강을 곧 자궁의 건강과 등치하며 여성 건강의 의미와 저출산 문제를 협소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이전의 1, 2차 기본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정책적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 위에 세워진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본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쓴다. 국가 입장에서 미래사회의 위협이란 노동력 고령화 현상이 벌어지는 동시에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숙련노동력 감소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은 국가의 위기 요소로 여겨진다. 이런 국가적 위기 요소를 불러일으킬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패러다임 전환을 표명하

며 출생,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출산과 관련해서는 임신 전, 임신 중, 분만, 출산 후에 따른 지원 형태를 명시하고 있다. 그 중 ‘임신 전’ 단계에서는 난임치료지원, 여성건강증진, 고용상 배려를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종합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건강증진 강화에 대해 한 가지 사업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바로 HPV 접종 사업이다. 만12세 여성에 대해 HPV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최초 생애전환기에 여성건강증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HPV 백신의 논의는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인식과 맞닿아 있다. 이는 건강한 자궁과 출산률 증대를 연속선상에 놓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다양하다. 자궁경부암의 발병률이 10만명 당 31명 수준인데 이를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꼽는 것은 백신이라는 물질을 통해 손쉽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이자 여성의 자궁을 출산을 위한 기관으로만 의미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흔히 HPV 백신의 국제보건 영역에서 여성건강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으며 여러 ‘저개발’ 국가들에 무료로 백신이 보급되는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재생산 건강을 규정하는 구조 속에서 이뤄지는 백신 접종은 오히려 여성을 미래의/현재의/이전의 ‘엄마’로서만 인식하는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Carpenter&Casper, 2009).

한국의 HPV 국가예방접종사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십대 여성의 건강이 출산 과정의 맥락에서만 고려되고 있다는 점, 성매개 감염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섹슈얼리티 문제—성적 지향이나 성폭력, 성관계 등의 문제들—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 공중보건과 의료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백신접종이 사회적 논쟁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 채 제도적으로 정착했다는 점 등이 있다.

HPV 백신의 종류 중 하나인 서바릭스의 한국 광고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바릭스는 가다실과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HPV 백신의 종류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백신은 세가지 종류(가다실, 서바릭스, 가다실9)가 있으며, 국가예방접종을 통해 지원되는 백신은 가다실, 서바릭스 두 가지 종류이다. 병원에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 백신의 광고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몇 년 전 서바릭스의 한 광고 포스터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여성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포스터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광고의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우와- 오늘 자궁경부암 백신인가 때문에 병원 간다구?

B: 아 몰라~!! 지금 우리 나이가 공짜로 놔주는 때라서 엄마가 절호의 찬스래.

C: 너 그거 압전히 맞는 게 좋을거야. 신문에서 사춘기 때 맞는 게 좋다고 했어!

B: 이 자식, 네가 뭘 알아? 남자가.

C: 사... 상관 있어! 여자가 나중에 내 아(아이)를 낳을 수도 있느냐!

이 광고에서 여성 청소년은 나중에 남성의 아이를 낳게 될지도 모를 몸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 청소년은 여성 청소년에게 ‘압전히’ 백신을 맞을 것을 권하고 있다. 나중에 자신의 아이를 낳을지도 모르는 여성은 건강한 자궁을 가진 여성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등장한 ‘꼬마숙녀’가 이 광고에서는 ‘내 아(아이)를 낳을’ 청소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HPV가 성매개감염병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사업에서는 대체로 성적 행위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십대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전면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미래에 ‘엄마’가 되기 위한 몸으로 십대 여성의 신체가 의미화되는데, 이는 HPV 백신의 제조사가 처음 미국에서 백신을 출시했을 때부터 최근까지 유지해 온 마케팅 전략과도 닿아있는 측면이 있다.

3.3. 섹슈얼리티가 아닌 건강

HPV 백신과 관련하여 여성 청소년들의 섹슈얼리티를 언급하지 않는 전략은 처음 가다실을 개발한 제약회사인 Merck사가 백신 출시 초기부터 지향해왔던 마케팅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미국은 HPV 백신의 접종을 둘러싸고 가장 큰 논쟁이 벌어졌던 국가 중 하나인데,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가다실이 어린 여성들의 (자유로운) 성관계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이해하면서 백신 접종에 반대했다. 하지만 오히려 백신 접종을 둘러싼 각종 담론들은 십대 여성을 성적이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여기도록 했다. 미국의 가다실 백신 광고에서 재현되는 어린 여성들의 몸은 미래에 건강한 여성이 되길 기대받는 몸이며, 따라서 미래를 위해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몸으로 표현되었다(Gottlieb, 2018). HPV가 이성간 성관계에 의해서만 전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성만이 감염되는 것도 아닌데 Merck는 FDA의 승인을 쉽게 획득하기 위해 여성의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했다(Gottlieb, 2018). HPV가 성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임을 강조하는 것보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자궁경부암을 예방해준다는 것이 FDA의 승인에도, 그리고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하기에도 더

나은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Merck사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전략은 십대 여성들로 하여금 자궁경부암의 위험을 알게 하고, 자신이 자궁경부암 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있음을 인지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십대 여성들과 그들의 어머니는 Merck사의 공략 대상이 되었는데 회사는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갖도록 만들었다. 그들의 슬로건인 (암환자가) “한 명 더 줄어들도록”이 그들의 의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 백신 접종을 하면 곧바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백신은 홍보되었고 상식적인 시민이라면 당연히 백신접종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도록 했다.

가다실은 다른 백신들과는 달리 여성에 대한 문화적 열망, 특히 어린 여성들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었다. 광고에 남성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고 광고에서 실제 성관계나 성적 행동, 건강, 성적 지향, 섹슈얼리티에 대한 언급은 등장하지 않았다. 가다실 광고에서 “섹스”, “성적 행동”이나 성과 관련된 용어들이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피접종자인 10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삭제하는 것이다. 그들은 HPV가 주로 성관계에 의해 감염되는데 불구하고 백신을 성적인 것과 결부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도록 애썼다. 이는 백신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한 Merck사의 전략이었는데, 대부분의 십대 여성의 접종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십대들의 성매개감염병을 강조하는 쪽보다 성적 측면을 숨기고 암이라는 ‘무시무시한’ 질병의 예방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광고 어디에서도 HPV가 성매개감염병의 일종이라는 언급은 등장하지 않는다(Gottlieb, 2018). 한국의 HPV 백신 광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셀럽 응원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한 바 있다. 이 광고들에는 주로 배우, 아나운서 등이 출연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접종을 독려하는데 여기서 주로 동원되는 수사는 멋진 엄마, 건강한 엄마 되기이다. “꿈 많은 소녀들이 미래의 멋진 엄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세요.”, “우리 꼬마 숙녀들이 멋진 엄마로 자랄 수 있도록, 선우용여 할머니도 응원할게! 사랑해요!”, “아이들이 멋진 사회인이자 미래의 건강한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발화들이 주로 등장한다. HPV라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기 보다는 주로 자궁의 건강을 지켜 건강한 엄마로 성장하길 응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3.4. 십대라는 나이

성경험이 있기 전에 백신 접종을 해야 효과가 높아지는 이 백신의 성격상 백신 접종 대상 나이가 특정하게 정해지는데, 이 연령부터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국가마다 성 문화 성숙도와 경제적 여건, 사회적 상황 등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 이 백신의 접종 권장 연령도 제각각이다. 한국에서도 이를 놓고 진통을 빚었는데 산부인과 의사사회와 소아청소년 의사사회 간에 HPV 백신 접종 시기를 놓고 의견 마찰을 있었던 것이다. 산부인과 의사사회 측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보통 고등학교 때부터 첫 성 경험을 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17살 무렵에 HPV 백신을 맞는게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소아청소년 의사사회 측은 백신은 어릴 때 맞아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더 어린 나이에 이 백신을 맞도록 해야 한다고 맞섰다(서한기, 2013). 하지만 청소년들의 성 경험 행태는 정확히 조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얼마 전 한 콘돔제조업체에서 주최한 10-19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십대에서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가 54.7%였다. 표본과 그 방법에 있어 차이는 있겠지만 이 수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8)에서 나타난 수치인 5.7%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8) 결과에 따르면 성관계 시작연령이 남성의 경우 13.3세, 여성의 경우 14.4세로 나타났다. 만12세에게 성과 관련된 정보를 노출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성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HPV에 대한 정보 유통이 어려우며, 이 정보에 대한 교육을 하기에는 나이가 어려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사실상 청소년들은 이미 성관계를 실천하고 있으며 여러 경로로 성관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건강한 자궁을 위한 백신接种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만12세 여성은 오히려 HPV에 관한 정보가 가장 필요한 집단일 수 있지만 HPV는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로 주로 불리면서 자궁경부암에 대한 공포가 전달되는 방식으로 백신接种이 권장되고 있는 현실이 있다.

만12세 여성이 성적으로 무지한 집단으로 묘사되는 동시에 그들의 건강을 위한 조기 개입은 공중보건 상의 이유나 개인의 건강 추구를 이유로 정당화되는데 여기에는 십대 집단에 대한 특정한 기대가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Adams et al(2009)은 ‘여성 청소년’이라는 특정한 젠더-나이가 젠더화된 ‘예측 레짐(anticipatory regime)’이 작동하는 하나의 장소라고 분석한다. 1990년대 초반부터의 신자유주의 발전 레짐은 ‘청소년 시기’를 ‘인적 자본’의 창조를 위한 중요한 장소로서 형성해왔으며 인적 자본 논의는 본질적으로 예측적 형식에 기대어 있고 미래 GDP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과 건강에 대한 투자를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HPV 백신을 주장하는데 이는 여성 청소년을 ‘건강한 성인 여성’이라는 인적 자본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기는 동시에 제약

자본은 자궁경부암을 토대로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형성하고 글로벌 건강 체제의 중요한 기반으로 이 백신 접종을 촉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0년 학교보건정책의 일환으로 ‘학생·청소년 성건강 증진’ 정책이 수립되어 학생(청소년) 성건강 모니터링 사업 등 총 7개의 세부사업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추진과정에서 사라지고 대신 학교보건정책에 ‘학생들의 건전한 이성교제의 조성’ 사업이 등장하였다. 이를 통해 성관계 경험률은 2020년까지 3.1%로 감소시키고 보건교육(성교육) 수강 경험률은 90.0%까지 증가시키겠다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장필화 외, 2017). 여전히 십대의 성은 통제해야 하고 미숙한 성, 보호해야 하는 성, 공적인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방지해야 하는 ‘문제적’ 행위로 구성되는 동시에 십대 여성의 신체는 국가의 면역체계와 미래의 건강한 인적 자본 형성을 위한 개입의 장소가 되고 있다.

4. 나가며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십대 여성의 HPV 백신 접종은 단지 자궁경부암이라는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료 실천임을 알 수 있다. 국가와 제약회사, 피접종자 등은 각기 다른 맥락으로 백신 접종 사업에 접근하고 있으며 본 글에서는 특히 국가 정책에서 십대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인식과 만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상황과 시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제약자본의 전략, 개인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추구 행위 사이의 연동은 십대 여성의 신체를 적절한 개입의 지점으로 형성해내고 있다.

후기 근대의 지배적인 정치적 합리성으로서의 신자유주의는 개인들을 자유롭고 스스로를 향상시킬 능력을 가진 주체로서 정의하고, 이러한 주체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신체의 모니터링과 증진, 위험 관리 등의 다양한 실천들과 테크놀로지들을 전개한다(양은경, 2016:55). 그리고 이러한 실천은 이 시대의 일종의 도덕으로 기능하며 건강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관리하는 것이 일종의 시민적 의무로 자리잡게 된다. 백신 거부 현상이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며 공중면역을 위한 시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보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건강과 면역을 위해 백신을 선택하는 일은 자신과 공동체를 위한 시민적 의무처럼 여겨진다. 이러한 도덕적 차원에서 백신 피접종 대상, 특히 여성들은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자신의 자궁 건강을 지키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옳은 선택이라 믿으며 백신 접종을 선택하게 된다.

백신 접종은 현재의 의료 체계 내에서 자연스러운 행위로 여겨진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백신 접종 행위를 낯설게 보며 이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담론 지형

을 되짚어가는 과정이 될 예정이다. 자궁 건강을 위해 어떤 젠더화된 담론들이 사용되는지, 십대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언어화되는지, 무엇이 신체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정당화하는지 등을 살펴보며 하나의 의료 행위가 국가제도로 자리잡는 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인류학 혹은 여성학의 역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재훈. 2016. 인유두종바이러스 관련 국내외 문헌조사 연구 = A literature review of Korean and international research on human papillomavirus :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 발사모, 앤(김경례 역). 2012. 『젠더화된 몸의 기술』. 아르케.
- 박정은. 2013.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및 의미 구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학과 석사학위논문.
- 백영경. 2012. HPV(인간유두종 바이러스) 관리의 사회적 정치적 효과에 대한 국제 비교: 각국의 백신 접종캠페인을 중심으로. *KNOU JOURNAL*, 54, 115-129.
- 서한기. 2013. 『대한민국 의료 커넥션』. 바다출판사
- 양은경. 2016. 위험에 처한 몸: '생활습관병'의 사회적 구성과 위험의 개인화. *언론과 사회*, 24(24), 47-88.
- 순데르 라잔, 카우시크(안수진 역). 2012. 『생명자본: 계급 이후 생명의 구성』. 그린비
- 장필화, 이명선, 노지은, 김성애. 2017.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 개념과 정책제언. *여성학논집*, 34(1), 61-101.
- 하대청. 2014. '위로부터의 지구화'와 위험담론의 역사적 구성. *환경사회학연구* ECO, 18(1), 235-278.
- Adams, V., Murphy, M., & Clarke, A. E. 2009. Anticipation: Technoscience, life, affect, temporality. *Subjectivity*, 28(1), 246-265.
- Carpenter, Laura M., and Monica J. Casper. 2009. Global Intimacies: Innovating the HPV Vaccine for Women's Health. *Women's Studies Quarterly*, 37(1/2), 80-100.
- Gottlieb, S. D. 2018. *Not Quite a Cancer Vaccine: Selling HPV and Cervical Cancer*. NJ: Rutgers University Press.

기타 자료

- 경기도의회, 월간 입법동향 2012.9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 대한민국정부, 2016-2020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8호
- EVE, 2019 청소년 성성문조사

20대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페미니즘’과 그 의미 : 페미니즘 ‘들’ 속에서 ‘나의 페미니즘’ 만들기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석사 오혜진

20대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페미니즘’과 그 의미: 페미니즘 ‘들’ 속에서 ‘나의 페미니즘’ 만들기

오혜진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석사)

➤ 들어가며

- 대중적 화두가 된 페미니즘과 ‘젊은’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관심과 명명, 범주화의 작업들
- 내적 동질성을 가진 어떤 단일한 실체로 고정화하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문제의식
- 페미니즘이 대중화된 시대에 디지털 공간과 현실의 생활 세계, 광장을 넘나들며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고 있는 개별 여성들의 체험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들어보고 이들 각자가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페미니즘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

▶ 심층면접

사례 번호	출생 연도	거주형태 (자취경험)	본인생활비 조달방법	연애경험	주요사용플랫폼	오프라인 공동체활동
1	1996	가족	없음	○	블로그, 인스타그램	-
2	1992	가족	없음	○	인스타그램	동아리
3	1995	가족	없음	연애중	인스타그램	-
4	1995	혼자	-	연애중	블로그	20대인 친구들의
5	1992	혼자	없음	x	블로그, 인스타그램	동아리
6	1995	가족	중간	x	블로그	-
7	1995	가족	중간	○	카톡, 인스타그램	동아리
8	1997	혼자	없음	연애중	블로그, 인스타그램	-
9	1995	혼자	없음	연애중	연애	-
10	1995	혼자	중간	○	인스타그램, 유튜브, 인스타그램, 유튜브	-
11	1995	혼자	중간	x	카톡, 인스타그램	-
12	1995	혼자	중간	x	블로그	-
13	1995	가족	중간	x	카톡, 인스타그램	-
14	1997	혼자	중간 - 없음	연애중	블로그,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동아리, 동아리

■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또는 석사과정생 중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생각하거나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진행.

■ 2018년 8월-2019년 4월에 걸쳐 7개 대학에 재학 중인 총 14명이 심층면접에 참여.

■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이라는 연구 참여자들의 위치는 어느 정도 이 집단을 특권화 하는 요소, 표집 시에 이를 고려하여 계층적 다양성, 대학 입학 전 성장 지역, 전공 등 나름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표집.

▶ 논문의 구성

- 1장 서론
- 2장 페미니스트 되기: “빨간약”을 먹은 여자들
- 3장 친밀한 관계에서 페미니스트로 살기
- 4장 페미니즘 ‘들’ 속에서 ‘나의 페미니즘’ 만들기
- 5장 결론

▶ 페미니즘‘들’ 속에서 ‘나의 페미니즘’ 만들기

- 현실과 디지털 공간에서 다양한 페미니즘들을 접하고 실천하면서 자신의 페미니즘을 구성해가는 연구 참여자들이 느끼는 혼란과 갈등에 주목
- 안티 페미니즘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물화된 페미니즘 인식에 맞서 싸우는 동시에 페미니스트 내부의 차이 또한 마주해야 하는 곤경 속에서 경험하는 긴장과 균열
-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이들에게 페미니즘은,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 이들이 지속 가능한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바탕과 과제는 무엇인지

▶ 페미니즘‘들’

-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전개되는 페미니즘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갈등을 민감하게 인식
- 이들이 주로 목격하고 고민하는 논란과 갈등은 페미니즘이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로 일반화하면서 남성을 아예 배제하는 “남성 혐오”로 가고 있다는 비판과 페미니스트들 내부에서 페미니즘 운동의 주체와 의제, 실천 방식 등을 둘러싸고 “진영”을 나누고 대립하고 있는 것
- 안티 페미니즘에 맞서 성차별이 엄존하는 현실을 강변하고 페미니즘을 ‘옹호’해야 하는 위치에서 자신의 페미니즘을 구성하고 있는 20대 페미니스트들이 “한 마음”인 줄 알았던 페미니스트들 간의 차이 또한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면서 겪는 곤경

▶ 남성에 대한 불신과 변화에 관한 전망

- 메갈리아와 미러링의 효과와 반격들
- 피-가해의 이분법 속에서 단순화되는 집단 정체성에 대한 성찰과 문제 제기
- 연구참여자들은 성차별을 사회 구조의 문제로 인식, 교차성을 체화
- ‘남성과 함께 하는, 소통하고 설득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의견 차이: 소통과 설득의 경험과 남성 집단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뢰 차이
- 변화를 위한 소통과 설득에 지친 이들이 입을 모아 주장하는 것은 이 설득과 소통이라는 노동의 책임을 개별 페미니스트들에게 지우기보다 페미니즘 교육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

▶ ‘여성’ 범주를 둘러싼 논란과 페미니즘 ‘진영’ 구분

- 페미니즘 운동의 주체와 연대라는 문제에서 퀴어 및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견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생물학적 여성만 페미니즘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연구 참여자는 없었음
- 퀴어 및 트랜스 배제에 관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장 고민이 되는 사안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남성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 논리

- ‘트랜스젠더가 여성성을 과잉 수행함으로써 여성이 겪는 여성성으로 인한 억압을 강화 한다’는 주장은 트위터, 여초카페, 에타 등에서 반복해서 게시되고 공유

- 영화와 같은 매체를 통해 재현되는 어떤 전형 이외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들의 다양한 삶의 맥락과 차이는 삭제된 채 트랜스젠더는 “여성인권을 떨어뜨린”다는 논리가 디지털 공간에서 유통

➤ ‘여성’ 범주를 둘러싼 논란과 페미니즘 ‘진영’ 구분

- 디지털 공간의 문법과 효과들 속에서 페미니즘 담론장을 진영구도로 이해하는 경향
- 논쟁과 논란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태로 내가 취할 “태도”나 “입장” 혹은 “대응할 논리”, “모범답안”이 무엇인지 고민
- 스스로를 “래디컬에 가까”운 “페미니스트이자 퀴어”라고 소개하는 사례 11의 경우 최근의 페미니즘 담론장을 “교차성과 래디컬로 나뉘”고, “퀴어 페미니즘과 래디컬과 싸우”는 상황으로 인식, 구조적 성차별에 문제 제기하기 위해 집단으로서 여성 범주를 구성하는 것과 교차성 논의가 “충돌”하며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면서 “입장”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되고 있음

➤ 하나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즘들

- 서로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분열”, “갈등”, “파벌”, “내분”, “편가르기” 등으로 인식, 이것이 운동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소강”시키고 “동지”를 잃는 일이라고 우려
- 페미니즘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디지털 공간에서 페미니즘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심하게 대립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이들은 힘 있는 여성 연대의 토대가 상실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페미니즘 내부의 차이를 애써 외면하고 공통성을 회구하는 태도를 구성하기도 함

➤ 하나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즘들

- 합의된 페미니즘에 대한 이런 열망은 의견 차이를 두고 논쟁과 토론을 주저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로 이어지기도 함.
- '하나의 진짜 올바른 페미니즘'에 합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논쟁과 토론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적. 공상적 합의가 운동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을 인식하면서 경합하는 페미니즘들 속에서 각자의 판본으로 페미니즘을 구성해나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페미니즘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오히려 페미니즘 담론장을 더 풍부하고 활발하게 만들고 지속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다양한 관심의제와 실천 방식들

- 성폭력, 불법촬영, 성매매, 낙태죄, 외모 꾸미기, 탈코르셋, 비혼, 임금격차, 채용차별, 핑크 택스(Pink Tax), 퀴어, 대중문화에서 나타나는 여성혐오 등 다양한 페미니즘 의제에 관심
- 연구참여자들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실천들을 하고 있음.
- 시위 참여, 탈코, 청원, 불매운동, 단체 후원 및 활동, SNS나 블로그 등을 활용해 페미니즘 글쓰기, 카드뉴스 제작배포, 문화제 기획, 페미니즘 모임, 성폭력 사건 공론화에 연대 등

▶ 디지털 공간이 매개하는 실천들과 규범이 된 페미니즘

-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공간의 문법에 익숙할뿐더러 이에 큰 영향을 받음.
- ‘메갈’의 미러링 실천이 남성들과 남성문화에 대한 조롱과 유머로 가득한 놀이의 측면이 강했다면, 의식화된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 이제 페미니즘을 좀 더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 또한 요청
- 안티 페미니즘과의 경합 속에서 ‘페미니즘이 옳다’고 선택한 페미니스트들은 뿌리 깊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개별 여성들 또한 성차별적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디지털 문화와 일상,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자들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 이는 페미니스트 개인이 수행할 것이 기대되고, 요청되는 다양한 종류의 실천들로 나타남.

▶ 디지털 공간이 매개하는 실천들과 규범이 된 페미니즘

- 이 실천들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과 토론, 거친 비난과 단절이 일어나기도 함. 이 모든 과정은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규범적 방식으로 페미니즘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경향도 곳곳에서 확인됨.
- 페미니즘을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다양한 판본들로 이해하기보다 이념형의 올바른 페미니즘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페미니스트 ‘자격’에 대한 심문을 낳기도 함.
- ‘페미니스트가 어떻게 그래?’ / ‘이런 내가 페미니스트가 맞나?’
- “조금만 빼끗하면 갑자기 페미니스트가 아니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사례 14는 페미니즘을 지켜야 할 규범으로 이해함으로써 이를 어겼을 때 마치 페미니스트 자격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 탈코르셋 운동과 페미니스트 ‘자격’

- 주로 탈코르셋 운동의 실천 여부를 두고 페미니스트 ‘자격’을 질문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선악으로 나뉘는 느낌”, 페미니스트가 되는 게 “단계가 있는 것 마냥” “검열”
- “입페미”, “패션페미”
- 탈코르셋을 실천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각자 실천의 이유와 그 방식이 다름. 이들이 탈코르셋을 지켜야 할 규범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페미니스트 전형에 대한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단정할 수는 없음. 공통점은 페미니스트라면 개인의 변화 혹은 사회의 변화를 위해 자신의 생각과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 “진정성”에 대한 요구

➤ 탈코르셋 운동과 페미니스트 ‘자격’

-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변화를 위한 실천의 방법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점에 내적 갈등, ‘옳고 그름’, ‘상호인정과 비난’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때문에 차이를 토론하는 것을 어려워함.
- 온라인 효과: 디지털 플랫폼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SNS상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문법, 논리 등을 체화하여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비난을 현실의 압력으로 느끼기도 함.
- 가장 올바른 페미니즘도, 가장 훌륭한 페미니스트 같은 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죄책감과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페미니스트 검증에 집착하지 않고 페미니즘을 규범화하는 태도들을 성찰하기 위한 바탕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

▶ 탈코르셋 운동과 페미니스트 ‘자격’

- 페미니즘 담론을 접하는 주요 통로가 디지털 공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담론이 치열하게 경합하는 디지털 공간에서 하나가 아닌 다양한 페미니즘을 만나고 있으며, 이에 나름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와 “입장”, “논란”을 마주하고 헛갈려 하면서, 논란에 대한 ‘정답’을 찾고,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야 한다는 압력에서 자유롭지도 않음.
- 페미니스트인가/아닌가보다 자신이 어떤 페미니스트가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공간의 문법과 현재적 지형이 가지는 영향력에서 거리 두고 상대화할 수 있는 공간과 관계가 필요
- 세미나, 학회, 동아리, 소모임, 여성학 관련 수업 등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논쟁과 토론을 해도 단절되지 않는 관계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이 비교적 ‘안전함’을 느끼며 자신의 태도와 생각, 페미니스트 지식을 구성, 갱신하는 경험을 했다는 점을 참고

▶ 페미니스트 실천의 의미

- 디지털 공간, 일상, 광장을 넘나들며 나름의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내가 하는 실천이 세상을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페미니스트로서 자기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실천들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음
-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변화에 대한 전망과 실천 방식에 대한 생각에 차이
- 사회 구조가 성차별적임을 인식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남성이나 사회가 단시일 내에 변화될 것이라는 신뢰가 거의 없음.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망과 전략을 밝히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함. 대신 최근 페미니스트들이 사회 변화를 위해 집합적 목소리를 내는 것에 고양감과 연결감을 느끼고 있음.

➤ 페미니스트 실천의 의미

- 최근 페미니스트 실천 방식의 특징이 개인화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진단과 비판
- 사회 변화의 책임을 개별 여성의 몫으로 두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여기게 만들거나, 중국에는 개인을 비난하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성차별이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중요한 페미니스트 실천으로 의미화 하는 것은 사회와 남성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여성들에 대한 기대와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

➤ 페미니스트 실천의 의미

- 변화는 나와 여성들에게, 그리고 나와 여성들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페미니즘은 자기 자신과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실천으로 의미화
- 자신을 포함한 여성들의 변화가 사회에 전시되고, 주변의 여성들에게 보여 짐으로써 다른 여성들에게 변화와 해방의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은 자신의 페미니스트 실천이 다른 여성들에게 롤모델이자 자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음

▶ 나가며

- 20대의 젊은 페미니스트들은 고정되고 완결된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여러 관계망 속에서 다양한 고민과 실천들을 통해 페미니스트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음
- 동질적인 집단으로 범주화할 수 없는 차이들과 동시에 페미니스트 연대에 대한 열망을 포착
- 가장 올바른 페미니즘도, 가장 훌륭한 페미니스트 같은 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죄책감과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페미니스트 검증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나의 페미니즘을 계속해서 갱신해 가는 것이 오히려 지속 가능한 페미니스트로 사는 길이라는 점이 되새겨질 필요
- 디지털 공간의 문법과 현재적 지형이 가지는 영향력에서 거리 두고 상대화할 수 있는 공간과 관계가 필요. 지속적으로 소속감을 갖고 꾸준한 활동의 터가 되는 페미니스트 공동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대학 정규 교육 안에서 페미니즘을 발전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젠더 연구 커리큘럼이 제공될 필요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네트워크 포럼

책을 뚫고 나온 페미니스트

퍼낸곳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퍼낸이 | 이미경

만든이 | 장주리

퍼낸날 | 2020년 2월 18일

주소 | (04072)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3층

전화 | 02-338-2829

팩스 | 02-338-7122

이메일 | research@sisters.or.kr

홈페이지 | www.sisters.or.kr

블로그 | www.stoprape.or.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ksvrc1991

트위터 | www.twitter.com/stoprape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ksvrc_sisters/